

제천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

의안 번호	1319
----------	------

제출년월일 : 2009년 2월 일
제출자 : 제천시장

1. 제안이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 시행규칙 제정과 가로수 조성 및 관리규정 산림청 고시 제2006-58호에 따른 가로수의 조성과 관리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목적과 용어의 정의, 그리고 가로수 관리대상 및 가로수 조성 및 관리 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조 내지 제4조)
- 가로수 수종선정 기준 및 구비조건, 조성협의, 식재위치, 식재기준, 식재시기, 바꿔심기, 메워심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내지 10조)
- 가지치기, 병해충방제, 외과수술, 지형과 토양보호, 가로수 관리시설물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1조 내지 제15조)
- 가로수 점검, 주민참여, 민간위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6조 내지 제18조)
- 원인자·훼손자 부담금, 부담금징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9조 내지 제20조)

3. 의안전문 : 볼 임

4. 관계법령 : 볼 임(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동법시행령, 동법시행 규칙, 도로법, 산림조합법, 가로수 조성 및 관리규정 고시(산림청))

- 첨 부 : 1. 의안전문 1부.
 2. 관계법령 1부.
 3. 입법예고 및 결과보고서 사본 1부.

제천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제21조제1항에 따라 가로수의 조성 및 관리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가로수”란 아름다운 경관의 조성, 환경오염 저감과 녹음 제공 등 생활·교통 환경 개선, 자연생태계의 연결성 유지 등을 위하여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도로의 도로구역 안 또는 그 주변에 심는 수목으로 도로의 구조보전과 안전하고 원활한 도로교통의 확보에 지장이 없도록 식재된 것을 말한다.
 - 가. 「도로법」 제8조에 따른 도로(고속국도는 제외한다)
 -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보행자전용도로 및 자전거전용도로
 - 다. 「농어촌 도로정비법」 제4조에 따른 면도 및 리도
 - 라.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노선이 지정·인정되지 않았더라도 사실상 가로수가 식재된 도로
2. “바꿔심기”란 경관을 해치거나 도로 교통안전에 장애를 주는 경우, 보행자나 지역주민의 안전에 문제가 있는 경우 또는 병충해 등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일정구간의 가로수 전체를 제거하고 동일한 장소에 적정한 가로수를 다시 심는 것을 말한다.
3. “메워 심기”란 동일한 간격으로 심겨진 가로수가 빠져 있는 곳이나 고사한 가로수를 제거하고 동일 수종으로 가로수를 식재함을 말한다. 단, 메워 심기를 통하여 연차적으로 수종을 바꿔심기할 경우에는 다른 수종으로 식재할 수 있다.
4. “가로수 지주대”란 가로수를 기상적·인위적인 피해로부터 보호하고 활착률을 높이기 위하여 설치하는 벼팀 시설물(이하 “지주대”라 한다)을 말한다.
5. “가로수 보호를”이란 가로수의 생육영역 확보와 보행자 등으로부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가로수 하단부의 지표면에 보도 포장과 구분하여 설치하는 시설물(이하 “보호틀”이라 한다)을 말한다.

6. “가로수 보호덮개”란 보호틀 안의 흙의 굳음을 방지하여 수분흡수, 공기순환 등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시설물, 나무파쇄물 또는 자갈 등(이하 “보호덮개”라 한다)을 말한다.
7. “가로수 보호대”란 정류장 · 횡단보도 주변 등과 각종 건설공사로 가로수의 훼손이 예상되는 곳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가로수 둘레에 설치한 시설물(이하 “보호대”라 한다)을 말한다.

제3조(관리대상) ①제2조제1호 각목에서 정한 제천시(이하 “시”라 한다.) 행정구역내 도로의 도로구역 안 또는 그 주변지역에 심는 수목을 관리 대상으로 한다.

②우선적으로 관리해야 할 가로수는 시장이 따로 정한 도로로 한다.

제4조(가로수 조성 및 관리 계획의 수립 · 시행) ①시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가로수 조성 및 관리계획을 수립 · 시행하여야 한다.

1. 가로수 시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가로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사항
3. 가로수 보전 ·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가로수 기능 증진 및 유지에 관한 사항
5. 가로수 재해 예방 및 복구에 관한 사항
6. 조성 및 관리에 소요되는 수종 등의 수급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7. 가로수의 지역별 · 노선별 수종 등 현황 분석
8. 그 밖에 가로수의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제1항에 따른 가로수 조성 및 관리계획은 10년마다 수립하되, 가로수 등의 현저한 상황변화 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제5조(수종의 선정 및 구비조건) ①가로수의 수종은 다음의 기준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1. 식재지역의 기후와 토양에 적합하며 주변경관과 어울리는 수종
2. 식재지역의 역사와 문화에 적합하고 향토성을 지닌 수종
3. 시민의 보건에 나쁜 영향을 끼치지 않는 수종

4. 환경오염 저감, 기후 조절 등에 적합한 수종

5. 그 밖의 특정 목적에 적합한 수종

② 가로수가 구비하여야 할 조건은 별표 1과 같다.

제6조(조성협의 등) 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담당 행정기관 또는 담당부서는 계획단계에서부터 가로수 담당부서와 반드시 협의하여야 한다.

1. 도로의 신설, 변경, 폐기 등으로 산지 또는 토지의 전용이 필요할 경우

2. 도로의 신설, 변경, 폐기 등으로 관련계획과 설계를 작성하는 경우

3.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도로에서 도로표지 등 안전시설물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4.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도로에서 전신주 등 통신·전기시설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5.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도로의 보도에 새로이 포장시설을 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6. 가로수에 대한 가지치기 등 가로수 관리사업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② 제1항의 사항에 대하여 협의할 경우 가로수 담당부서는 다음의 각호에 대한 사항을 관련법령에 맞게 검토하여야 한다.

1. 도로의 신설·변경계획에 가로수를 조성할 계획이 포함되었는지의 여부

2. 도로의 설계에 가로수 식재공간이 반영되었는지의 여부

3. 도로표지 등 안전시설물과 전신주 등 통신·전기시설의 설치시 위치 선정의 적정성, 안전시설물의 종류·규격에 대한 적정성, 통신·전기 시설의 지하매설화 가능성 검토

4. 보도의 포장시설의 신설 또는 교체시 가로수 보호틀의 확대 필요성 등

5. 그 밖에 관련법령 및 조례, 가로수조성 및 관리계획에 의한 사항

제7조(식재 위치) 가로수는 도로의 폭, 도로주변의 장애물 등 주변 여건에 따라 보행자와 운전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도로의 구조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다음의 각 호에서 정한 위치에 식재한다.

1. 보도에 교목을 식재할 경우에는 제설제 등 화학약품으로부터의 약해와 이동차량 등으로부터의 물리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도로에 접한 보도에 식재할 경우 보·차도 경계선으로부터 가로수 수간의 중심까지의 거리는 최소 1m 이상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보도폭원 등 여건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2. 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행자전용도로 및 자전거전용도로에는 보행자 및 자전거의 원활한 이동과 안전에 제한이 없는 범위 내에서 가로수를 식재할 수 있다.
3. 중앙분리대 등 기타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치에 가로수를 식재할 수 있다.

제8조(가로수의 식재 기준) 가로수는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식재하여야 한다.

1. 교목

- 가. 식재간격은 8m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도로의 위치와 주위여건, 식재수종의 수관 폭과 생장속도, 가로수로 인한 피해 등을 고려하여 식재간격을 조정할 수 있다.
- 나. 식재유형은 도로선형과 평행하도록 열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도로의 여건, 방음·녹음제공·경관개선 등 특정목적에 따라 군식·혼식할 수 있다.
- 다. 보도의 한쪽을 기준으로 1열 심기를 하고 보도의 여건에 따라 2열 이상 식재할 수 있다.
- 라. 도로의 동일 노선과 도로 양측에는 동일 수종으로 식재한다. 다만, 도로의 방향이 바뀌거나 도로가 신설·확장되는 경우에는 동일 노선 일지라도 다른 수종으로 식재 할 수 있다.
- 2. 관목은 식재수종의 특성에 따라 아름다운 경관조성과 교통장애가 없는 범위 안에서 식재할 수 있다.
- 3. 식재공간의 여유가 있는 경우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과 도로구조의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교목과 관목, 초본류를 다층구조로 식재할 수 있다.

4. 지하의 인공구조물로 인하여 가로수의 식재가 어려운 지역은 저수장치 등을 갖춘 이동식 화분형에 가로수를 식재할 수 있다.

제9조(식재시기) 식재의 시기는 가로수가 정상적인 활착이 가능한 봄철과 가을철에 심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따로 기간을 정하여 심을 수 있다.

제10조(바꿔심기 및 메워 심기) ① 바꿔심기 및 메워 심기 대상 가로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고사 가로수

2. 수피 및 수형이 극히 불량한 가로수

3. 수간이 부러졌거나 썩어서 부러질 위험이 있는 가로수

4. 병충해에 감염되어 생육 가망이 없는 가로수

5. 재해와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가로수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바꿔심기 또는 메워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적기에 적정하게 시행되도록 한다. 다만, 적기가 아닌 때에는 돌아오는 식재시기에 식재할 수 있다.

제11조(가지치기) ① 가로수는 자연형으로 육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수형에 변화를 주지 않는 범위 안에서 가로수의 건강한 생육, 아름다운 수형, 도로표지 및 신호등 등과 같은 도로안전시설에 대한 시계 확보, 통행공간의 확보, 전송·통신시설물의 안전 등을 위하여 가지치기를 할 경우에는 별표 2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가지치기를 실시한다.

② 가로수 가지치기는 관계공무원의 감독 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 이외의 자가 가로수의 가지치기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2조(병해충의 방제) 시장은 병해충의 발생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가로수에 대한 병해충 방제를 실시하여야 한다.

1. 병해충 방제를 실시하기 전에 주민에게 고지하는 등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피해가 예상되거나 피해를 입은 가로수에 대하여 가지치기·바꿔심기·메워심기 등을 통한 임업적 방제를 우선적으로 실시하며 이로 인

하여 발생된 가지와 낙엽 등은 필요한 경우 소각 처리한다.

3.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임업적 방제로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을 때에는 약제 등을 이용한 화학적 방제를 실시할 수 있다.
4. 제3호에 의한 화학적 방제를 실시할 경우 인근 주민·보행자·운전자 또는 동·식물에 대한 피해, 수계 유입으로 인한 생태계파괴, 토양오염 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저독성 약제로 필요 최소량을 사용하여야 한다.
5. 월동중인 유충을 포살하기 위하여 짚이나 새끼 등을 가로수 줄기에 감아서 병해충을 방제할 수 있다.
6. 가로수에 대한 병해충 방제 시에는 관계공무원의 감독 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제13조(가로수의 외과수술 등) ① 병해충, 분진, 매연, 화학약품, 물리적 피해 등을 받았거나 수세가 쇠약하여 피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가로수는 외과수술, 영양공급, 토질개량, 통기구, 관수시설설치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가로수의 수관폭 안에서 공사 등의 작업을 할 때에는 공사시행 전에 가로수를 보호할 수 있는 보호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14조(지형과 토양 보호) 시장은 다음 각호와 같이 가로수가 식재된 지역의 지형과 토양을 보전하여야 한다.

1. 가로수의 식재지 또는 계획지에 대한 절토·성토 등 지형변경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의 각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가. 주변에 시각적으로 가려야 할 필요가 있는 대상물이 있거나 방음 수립대를 조성할 필요가 있는 지역 등에 대한 절·성토
 - 나. 보행자, 운전자 및 지역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의 절·성토
 - 다. 도로의 신설·개축·수선·유지보수공사 등을 위한 절·성토
 - 라.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2. 가로수 조성계획지 또는 기조성지의 토양이 쓰레기, 건축폐기물 매립 등으로 가로수의 정상적인 생육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기존의 불량토양을 제거하고 생육에 적합한 토양으로 환토하여야 한다.

3. 가로수 조성계획지의 토양 또는 기조성지의 토양이 오염, 척박화 등으로 인하여 가로수 생육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토질개량 또는 시비하여 가로수 생육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4. 가로수 식재, 불가피한 지형의 변경 등에 의해 발생하는 보존이 필요 한 표토는 일정한 장소에 수집·보관하였다가 표토로 재사용하여야 하며, 표토의 깊이는 30cm 이상으로 한다.
5. 동절기 도로 제설을 위해 사용된 화학약품이 섞인 눈 더미가 식수대 내에 적재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5조(가로수 관리시설물) 지주대, 보호틀, 보호덮개, 보호대 등 새로이 조성하는 가로수에 설치하는 관리시설물 및 기존의 시설물에 대한 개·보수시 별표 3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관리한다.

제16조(점검) ① 시장은 노선별·수종별로 가로수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점검대상은 바꿔심기를 요하는 가로수, 병충해의 감염여부, 고사목 메워심기 또는 신규 식재량 및 생육상태, 식재지 토양상태 등으로 한다.
③ 정기점검은 매년 5월과, 11월에 실시한다.
④ 수시점검은 병해충 확산 등으로 피해가 발생하여 긴급히 점검해야 할 경우 또는 식재·메워심기·바꿔심기 등 관리상 필요한 시기에 점검할 수 있다.

제17조(가로수관리의 주민참여 등) ① 시장은 가로수 관리의 주민참여를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권장할 수 있다.

1. 물주기
 2. 병해충 발생 신고
 3. 가로수 생육에 지장을 주거나 피해를 주는 장애물의 제거
 4. 사고 또는 고의로 가로수가 피해를 받았거나 받을 우려가 있을 때 시장에게 신고
 5. 비상재해 시 긴급조치 지원 및 협조
- ② 시장은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들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민들에

대한 홍보와 계도를 실시하여야 한다.

1. 가로수 또는 관리시설에 광고물을 부착하는 행위
2. 가로수 또는 관리시설을 공작물의 지주로 이용하는 행위
3. 보호틀 또는 보호대 안에 쓰레기 등 물건을 적재하거나 주차하는 행위
4. 그 밖에 가로수의 생육이나 관리에 지장을 주거나 지장이 예상되는 일체의 행위

③ 모든 주민은 시장이 시행하는 가로수의 유지·관리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④ 주민들이 직접 가로수의 유지·관리에 참여할 경우 시장은 필요한 재료나 물품, 장비, 가로수 부산물인 열매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가로수 식재와 관리의 민간위탁) ① 시장은 가로수의 식재 및 관리 업무의 일부를 법 제24조에 의한 산림사업 등록 법인, 동법 시행령 제25조 별표1 제6호에 따른 도시림 조성·관리 법인, 「산림조합법」 제46조 및 108조에 따른 산림조합 및 산림조합중앙회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3조에 의한 가로수의 외과수술 등을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법 시행령 제25조 별표1 제3호에 따른 수목 피해진단·처방 및 치유사업의 자격요건을 갖춘 법인 또는 「산림조합법」 제108조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에게 위탁하여야 한다.

제19조(원인자·훼손자 부담금)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아닌 자(이하 "원인자" 라 한다)가 가로수를 식재·이식·제거 또는 가지치기 등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작업개시 1개월 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승인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적합여부 및 신청수량의 적정여부 등을 조사·확인하여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의 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 법령, 조례, 계획 등과 적합하지 않을 경우 내용을 보완하여 7일 이내에 재승인 신청을 요구할 수 있고 시장은 재승인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인자가 그 비용을 부담하

여야 한다.

④시장은 가로수와 가로수 관리시설물이 사고 또는 위해로 인하여 인위적인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 훼손자에게 비용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⑤제1항에 따른 가로수의 가지치기와 이식은 시장이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원인자에게 작업을 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⑥부담금의 산정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20조(부담금의 징수) ① 시장은 제19조에 따라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납부기간을 정하여 독촉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제1항의 경우에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세법 제27조 규정의 가산금 산정을 준용한다.

③시장은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그 기한 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제21조(관리의 협의 및 제정) 행정구역의 경계에 있는 가로수의 관리는 관계 관리청 간의 협의에 따라 관리 한다.

제22조(가로수관리대장) 시장은 가로수의 합리적 관리를 위하여 노선별로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관리대장과 전산화된 대장을 만들어 관리한다.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

가로수의 구비조건(제5조제2항관련)

1. 수형이 정돈 되어 있을 것
2. 발육이 양호할 것
3. 가지와 잎이 치밀하게 발달하였을 것
4. 병충의 피해가 없을 것
5. 재배수인 경우 활착이 용이하도록 미리 이식하였거나 완전한 뿌리 끊기 및 뿌리돌림을 실시하여 세근이 잘 발달하였을 것
6. 재배수가 (1) 내지 (4)를 충족하고 충분한 크기의 분을 떠서 이식할 수 있을 것

[별표 2]

1. 가지치기 대상 및 방법(제11조 제1항 관련)

1. 대상	가. 병충해 피해 가지 나. 웃자란 가지 또는 쇠약한 가지 다. 마른가지(고사지) 라. 늘어지거나 가지끼리 교차되어 미관상 좋지 않은 가지 바. 뿌리 부분에서 새로 나온 키 큰나무(교목)의 움(맹아) 사. 지하부에 비하여 지상부가 지나치게 무성하여 풍해, 설해 등의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아. 가지가 도로표지·신호등과 같은 도로안전시설의 시계를 가리는 경우 자. 가지가 전기·통신시설물에 달아 안전에 문제가 있는 경우
	가로수·가지치기작업 시기는 낙엽 후부터 이른 봄 새싹이 트기 전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은 인명·재산피해 등 안전상 위해요인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려하지 아니하다.
	가. 가로수 가지치기는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1) 노선별, 구간별로 수관의 모양과 높이를 일정하게 유도하되 약전지 위주로 실시하여야 한다. 2) 가로수와 도로시설물과의 상충을 피하기 위하여 가로수 지하고가 점차 높아지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3) 수형 조절을 위한 가지치기는 시행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수목의 지상부와 지하부의 균형 조절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전체 수형을 고려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4) 고압선, 교통표시판, 신호등, 건물 등에 달는 가지는 달는 부분만 자르고 수형을 다듬어 주어야 한다.
	나. 가로수 가지치기작업은 수종별 고유 수형을 유지하여 자연스런 상태가 되도록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1) 침엽수는 눈 바로 위쪽에서, 활엽수는 아래로 향한 눈 위에서 가지치기 한다. 2) 피해를 입은 가지는 살아 있는 끝부분에서 가지치기 한다. 3) 살아있는 가지는 나무의 전체적인 수형 및 피해부위를 감안하여 가지 기부 또는 중간부위에서 가지치기 한다. 4) 가지를 자를 때에는 별표 2 제2-1호의 방법에 의하여 지름부가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5) 가지의 중간을 자를 때에는 밟아 육성하고자 하는 눈 위에서 가지치기 한다. 6) 흄을 사용하여 절단면이 거칠어지지 않도록 가지치기 한다. 7) 굵은 가지를 자를 때에는 흄으로 먼저 가지 밑 부분을 일정 깊이로 자른 후 상단부를 잘라 수간이 갈라지거나 나무껍질이 벗겨지는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가지치기 한다. 8) 가로수 가지치기의 수종별 기본 수형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가) 은행나무, 메타세콰이어, 활엽수 등 수형이 원정형인 가로수는 아래 그림의 방법에 의하여 가지치기 한다. 나) 버즘나무, 가중나무등 수형이 원정형인 가로수는 별표 2 제2-2호의 방법에 의하여 가지치기 한다. 다) 느티나무, 회화나무, 단풍나무등 수형이 평정형인 가로수는 별표 2 제2-2호의 방법에 의하여 가지치기 한다.
4. 절단면 의 처리	절단면이 넓어 부패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통신패스트(자오판도포제) 등으로 도포하여 부추군의 침입을 방지

2. 가지치기 실행기준

2-1. 가지치기 일반사항



지융부가 없을 때 줄기 가까이 가지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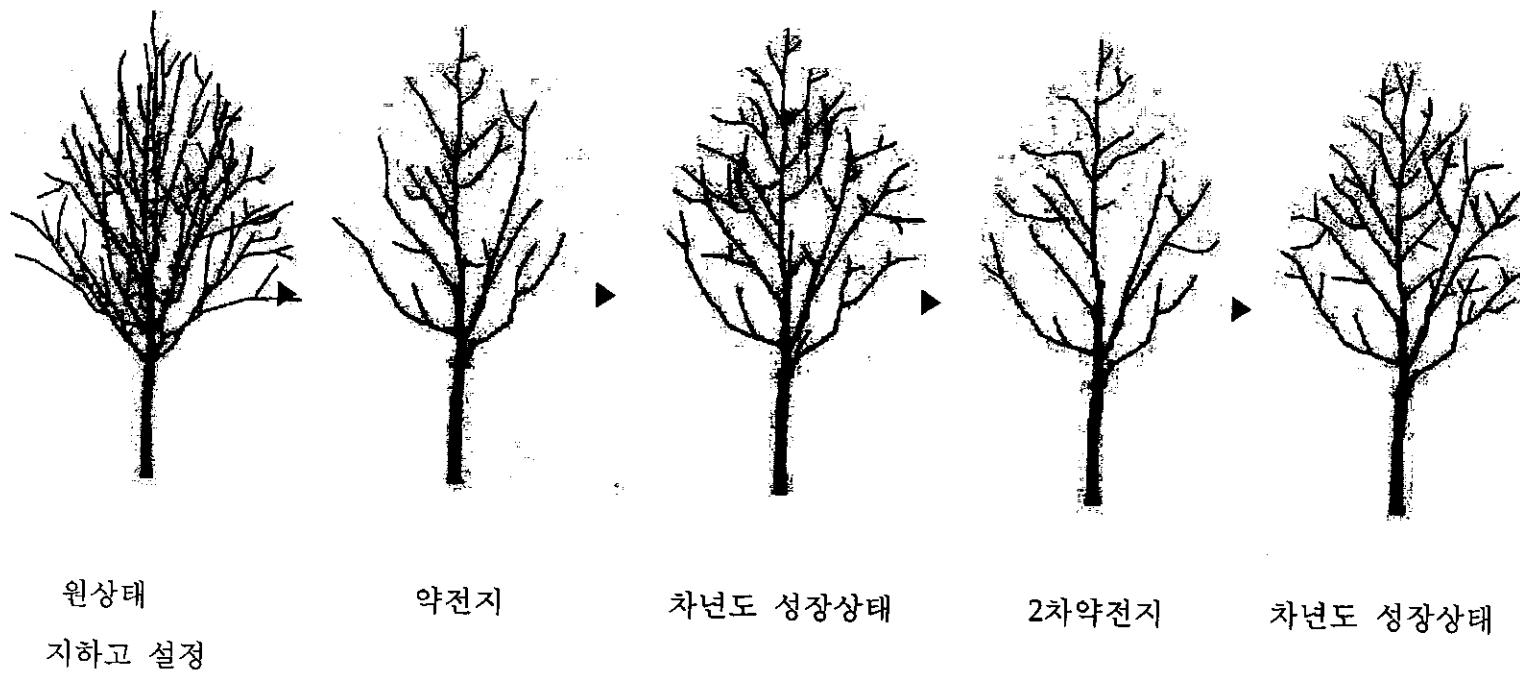
지융부가 있을 때 지융부 가까이 가지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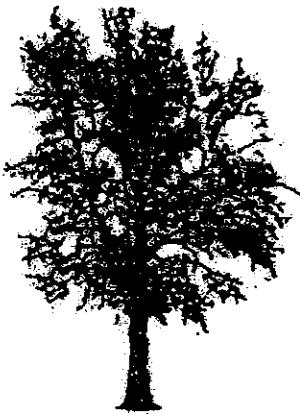
으뜸가지 이하에 있는 것만 가지치기

2-2. 수종별 가지치기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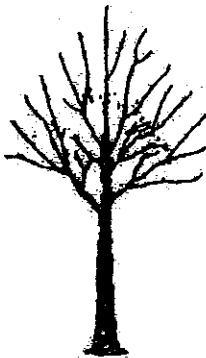
- 은행나무 등 원추형 가로수 가지치기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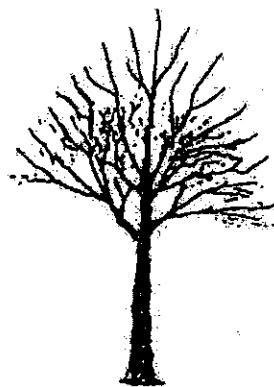
○ 벼름나무 등 원정형 가로수 가지치기 방법



원상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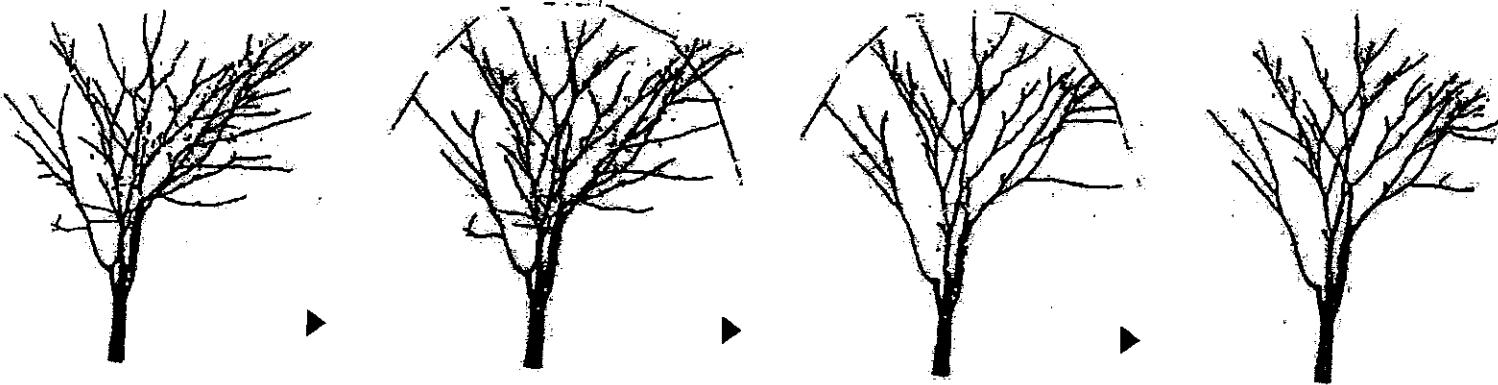


약전지



성장상태

○ 느티나무 등 평정형 가로수 가지치기 방법



원상태

수관폭 축소 범위설정
지하고 설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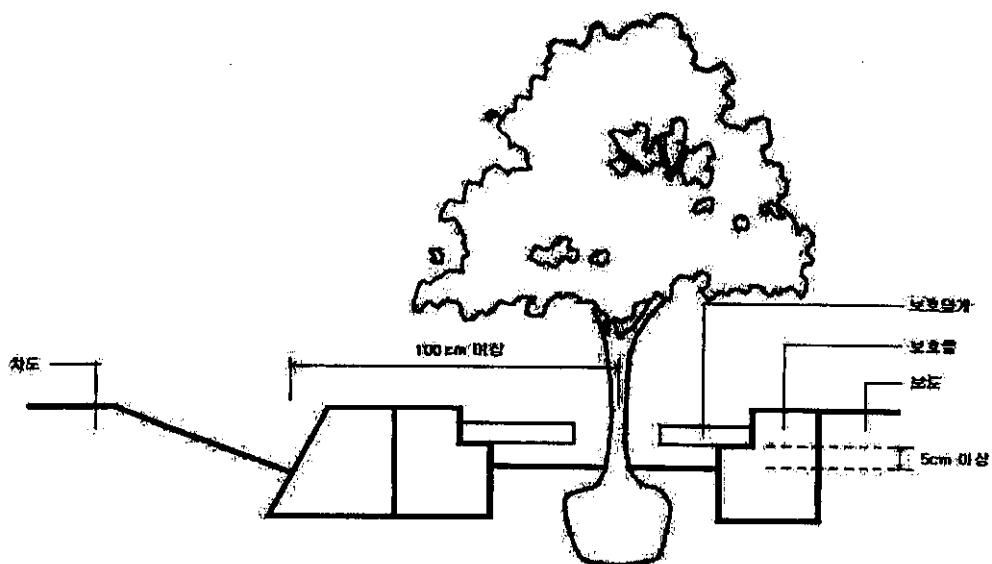
솎음전지

차년도 성장상태

[별표 3]

1. 가로수 관리시설물의 설치(제15조관련)

1-1. 관리시설물과 가로수의 위치



- 가로수의 중심에서 보·차도 경계까지의 거리는 100cm 이상이어야 한다.
- 보호덮개(철제 등 구조물)와 지면파의 높이 차이는 5cm 이상을 원칙으로 하나 차량이나 기타 인위적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은 5cm 이하로 할 수 있다.
- 보호틀과 보도의 높이를 같게 하여 우수 등이 보호틀 내로 유입될 수 있도록 한다.

1-2. 보호틀, 보호덮개, 보호대, 통기·관수시설

가. 일반사항

<보호틀>

- 보호틀은 도로의 여건에 따라 대상형, 직사각형, 정사각형, 부정형으로 한다.
- 가로수의 원활한 생육공간 확보와 비포장면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하여 대상형, 직사각형, 정사각형의 순으로 설치하고, 부정형은 도로의 여건과 가로수 수종에 따라 설치한다.
- 대상형 보호틀은 교통량·보행자가 많지 않거나 보도의 폭이 넓을 경우 설치한다. 대상형 보호틀의 크기는 좁은 폭을 1.5m 이상으로 하되 도로의 여건과 가로수 수종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 직사각형 보호틀의 크기는 좁은 폭 1.5m 이상, 넓은 폭 3m 이상으로 하되 도로의 여건과 가로수 수종에 따라 크기를 조정할 수 있다.
- 정사각형의 보호틀은 교통량·보행자가 아주 적거나 보도의 폭이 협소할 경우 설치한다. 정사각형 보호틀의 크기는 가로와 세로 각각 1.5m 이상으로 하되 도로의 여건과 가로수 수종에 따라 크기를 조정할 수 있다.

<보호덮개>

- 보호덮개는 철제 등의 구조물 또는 나무파쇄물, 자갈 등으로 한다.
- 철제 등의 구조물로 된 보호덮개를 사용하지 않고 나무파쇄물, 자갈을 채우거나 잔디, 초화류, 관목류 등을 심을 수 있으며 구조물로 된 보호덮개 하단에 잔디 등을 식재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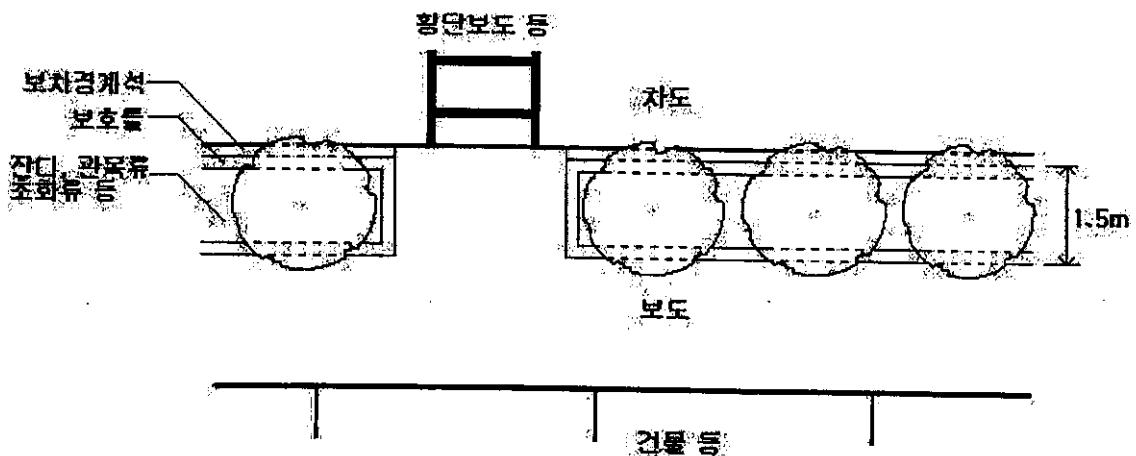
<보호대>

- 보호대는 보행자나 차량에 의한 피해가 예상되는 횡단보도 주변 등의 가로수나 특별히 보호해야 할 가로수에 설치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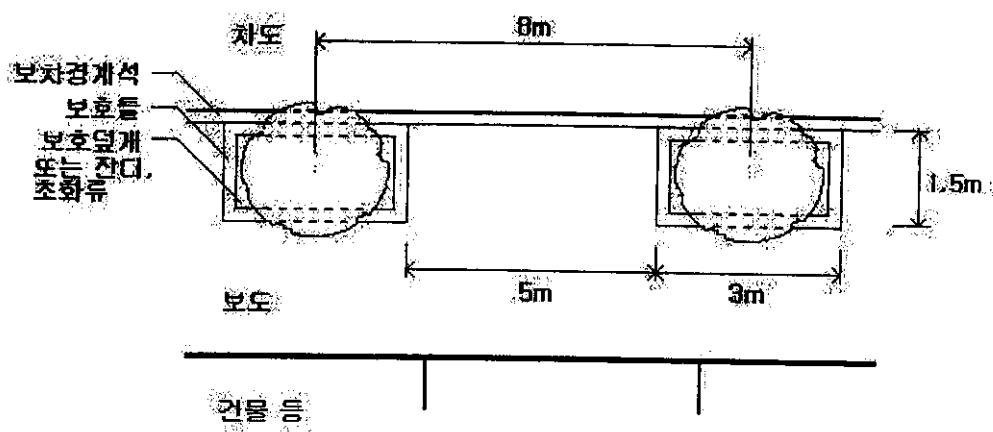
<통기·관수시설>

- 통기·관수시설은 담압 등으로 인해 우수·관수 등이 땅속 깊숙이 침투하지 못하거나 통기성이 불량할 때 설치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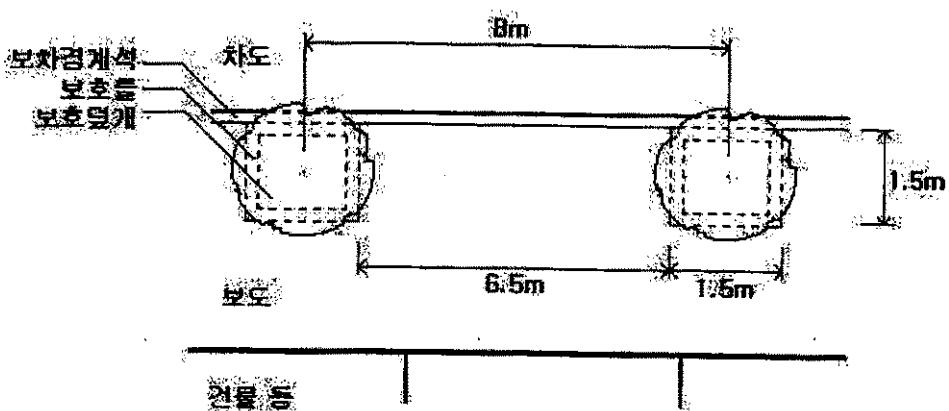
나. 대상형 보호틀 및 보호덮개 설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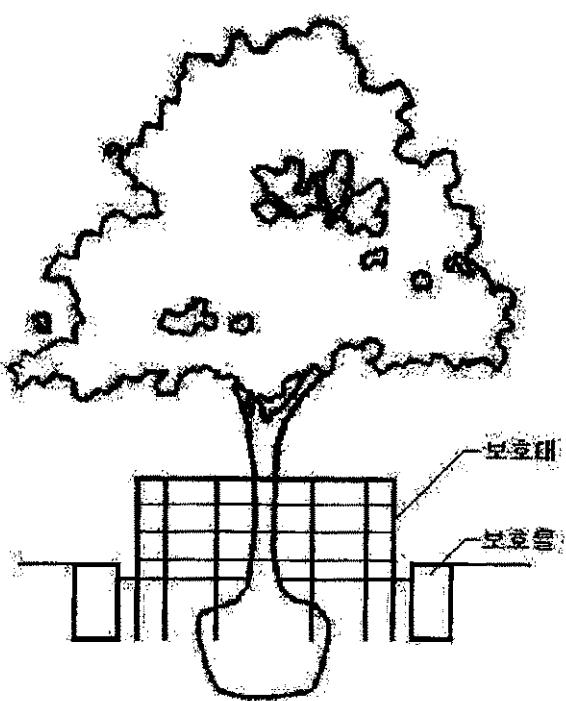
다. 직사각형 보호틀 및 보호덮개 설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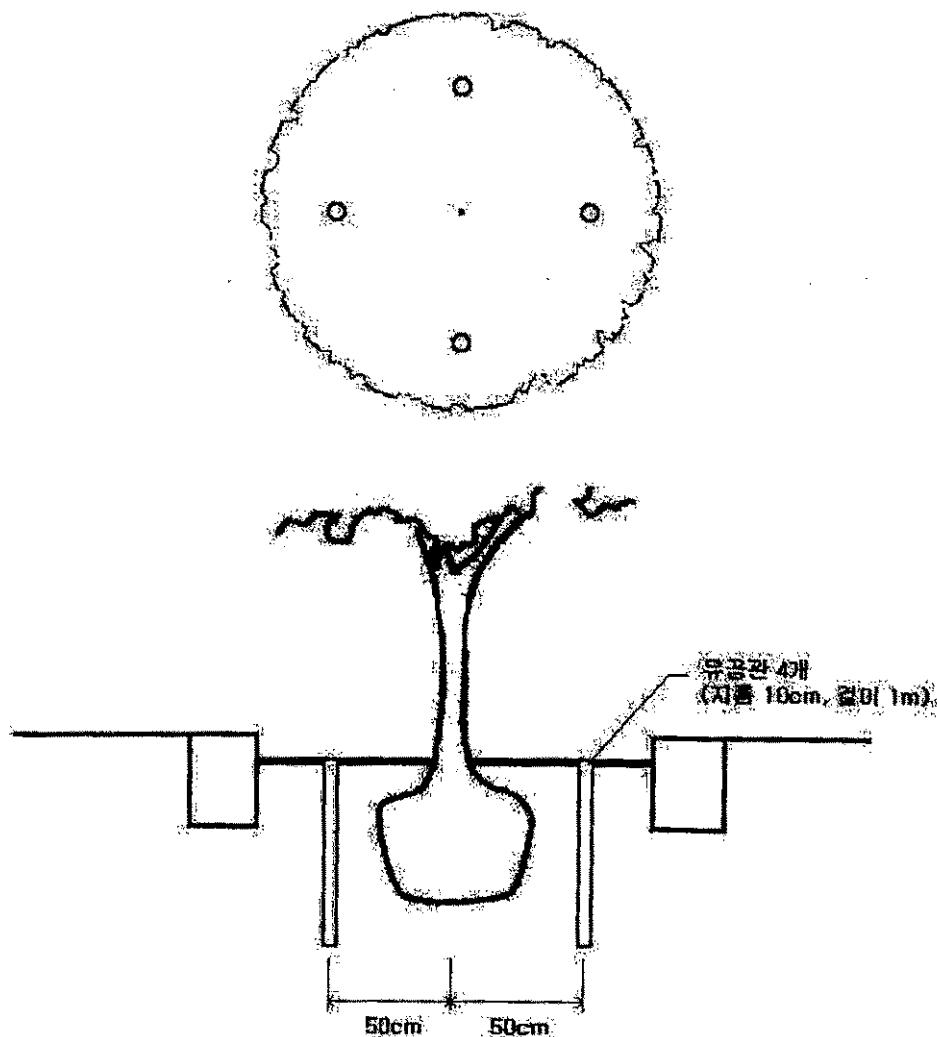
라. 정사각형 보호틀 및 보호덮개 설치



마. 보호대 설치



바. 통기·관수시설 설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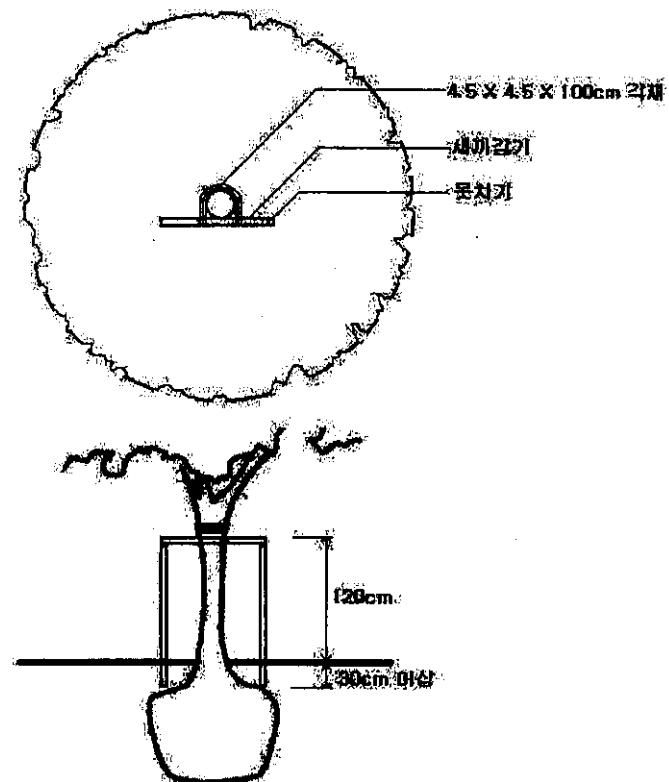
- 가로수 중심으로부터 50cm 되는 곳에 지름 10cm 이상의 유공관을 4개 이상 설치 하여 통기성을 개선하고 우수나 관수사 땅속 깊이 물이 스며들 수 있도록 1m 이상 깊이로 설치한다.
- 유공관 내부는 지름 2cm 가량의 쇠석으로 채운다.

1-3. 지주대의 설치

가. 지주대 설치의 일반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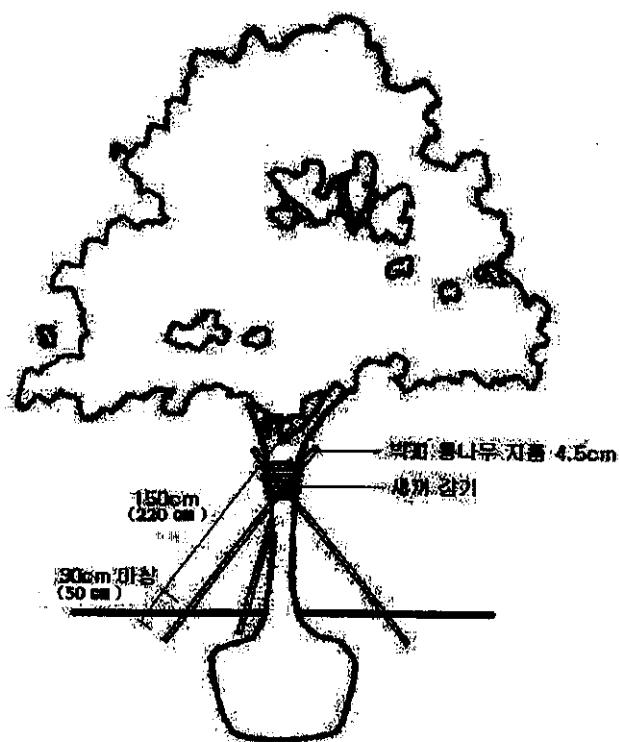
- 지주대는 박피 통나무, 각목 또는 특별히 고안된 재료(각종 파이프, 와이어, 플라스틱)로 사용할 수 있다. 단, 지주용 목재는 내구성이 강한 것이나 방부처리(탄화, 도료, 약물주입)한 것으로 한다.
- 수고 4.5m 이상의 가로수에는 지주목을 삼각형으로 세우거나 당김출형 또는 연계형으로 설치한다.
- 수고 4.5m 미만의 가로수는 이각형, 삼발이, 삼각형, 사각형을 설치한다.
- 매몰형지주대는 수목식재가 경관상 매우 중요하고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지표에 지주대가 나타나지 않아야 할 때 사용한다.
- 지주대와 수목을 결박하는 부위에는 완충재를 수간에 대여 가로수의 성장에 따른 수간의 손상을 방지하여야 한다.
- 지주의 방향은 주풍 방향을 고려하여야 하며 경사지 등 지형적인 관계나 지반과의 관계도 고려하여야 한다.
- 땅속에 지주대를 박을 때 선단부가 쪼개지거나 부서질 우려가 있는 경우 톱으로 그 부분을 잘라 보기 흉하지 않도록 해 놓는 동시에 내구성과 미관을 고려하여 지주대의 자상부에 페인트나 방부제를 발라 놓는다.
- 가로수가 완전히 활착되어 더 이상 지주대의 필요가 없을 경우 생장에 따른 수간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주대를 제거하여야 한다.

나. 이각 지주대 설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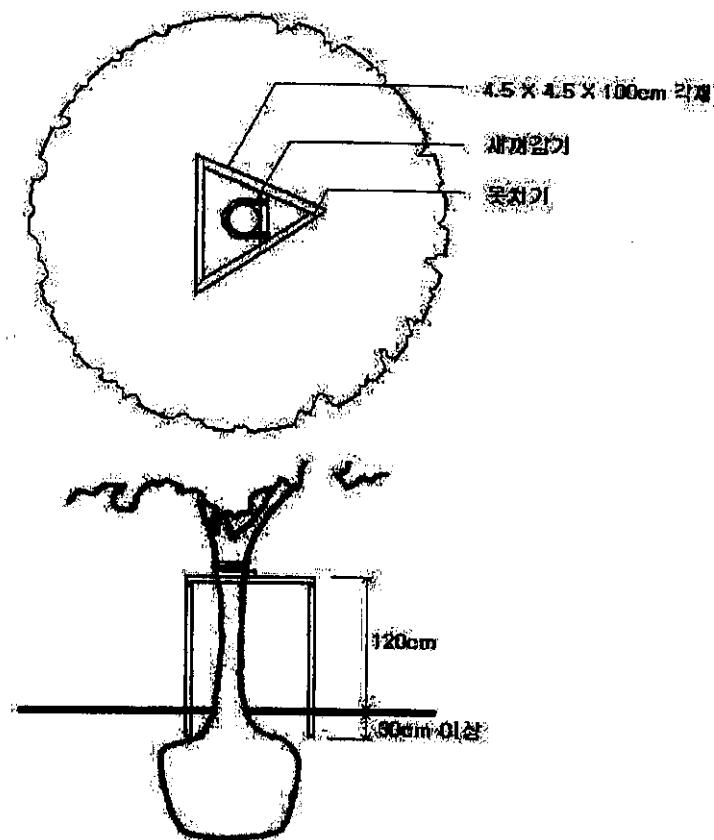
○ 수고가 2m 이하일 경우 적용하며 수목의 중심으로부터 양쪽으로 일정 간격을 벌려서 각 목이나 말뚝을 깊이 30cm 정도로 박고, 박은 나무를 각목과 연결 못으로 고정시킨 다음 가로지르는 각목과 가로수의 주간을 새끼나 끈으로 묶는다.

다. 삼발이 지주대 설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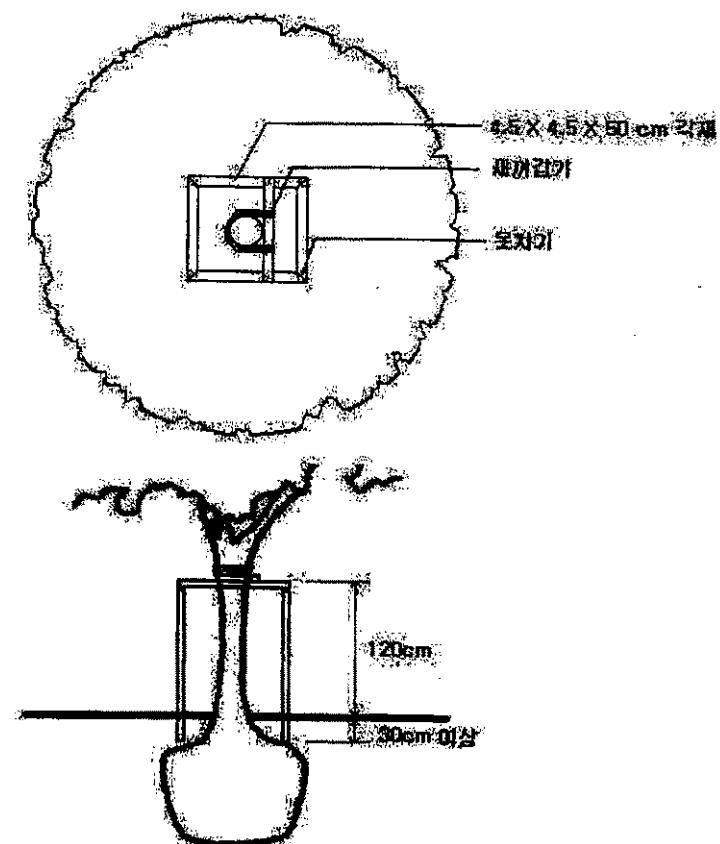
- 삼발이 지주대(소형) : 일반적으로 수고 4.5m 미만의 경우 적용하며 경관상 주요 지점이 아닌 곳에 설치한다. 길이 180cm 정도의 박피 통나무나 각재, 또는 플라스틱 등 기타 재료로 된 것을 사용하여 삼각형으로 절쳐 주간을 안정시킨다.
- 삼발이 지주대(대형) : 일반적으로 수고 4.5m 이상의 경우 적용하며 경관상 주요 지점이 아닌 곳에 설치한다. 길이는 270cm 정도의 지주대를 사용하고 약 50cm를 땅에 묻는다.

라. 삼각 지주대 설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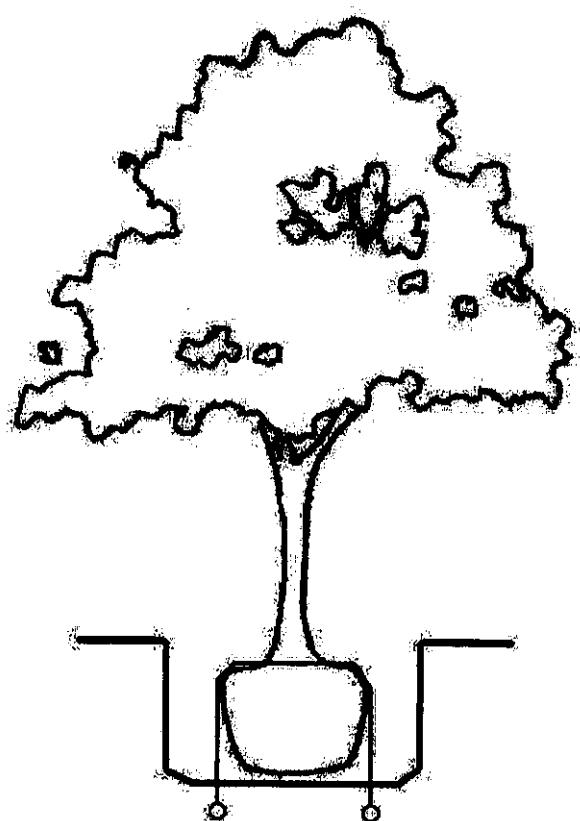
- 삼각 지주대는 삼발이 지주대에 비해 소요되는 공간이 적어 보도의 폭이 좁을 경우에 사용한다.
- 각재나 박피 통나무, 기타 재료를 이용하여 시가지 등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곳에 설치한다.

마. 사각 지주대 설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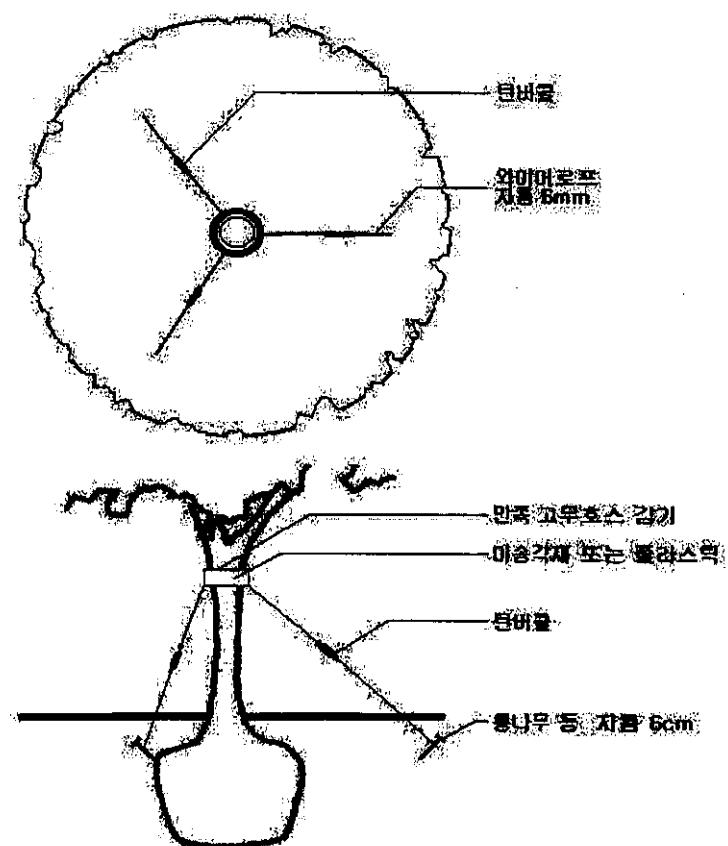
- 삼각 지주목과 마찬가지로 보도의 폭이 좁을 때 사용한다.
- 각재나 박피 통나무, 기타 재료를 이용하여 시가지 등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곳에 설치한다.

바. 매몰형 지주대 설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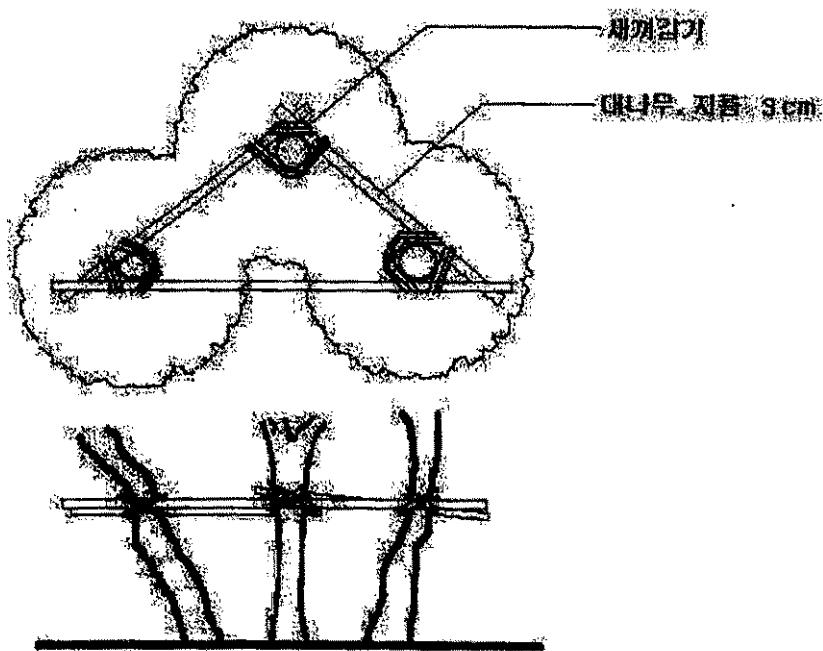
- 가로수의 식재가 매우 중요한 위치일 경우, 또는 지주대가 통행에 지장이 많다고 판단 되는 경우 이 방법을 사용한다.

사. 당김줄 지주대 설치



- 일반적으로 대형 거목에 적용하며 특히 경관적 가치가 요구되는 곳에 설치한다. 수목의 주간에 완충재를 감아 수피를 보호하고 그 부위에서 세 방향으로 철선을 당겨 지중에 박은 말뚝에 고정한다.
-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보행자가 알 수 있도록 와이어로프에 표식(끈, 리본 등)을 달아야 한다.

아. 연계형 지주대 설치



- 군식을 할 경우 3~4개의 수목을 한꺼번에 안정시킬 경우에 사용한다. 수목의 주간에 완충재를 감아 수피를 보호한다.

[별표 4]

부담금의 산정기준(제19조 제6항 관련)

▲ 피해 발생의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별목, 수간절단 등 피해로 교체하는 경우 ⇒ 원상복구를 위한 도급공사설계비 ○ 과도한 가지훼손 또는 상당한 보호시설을 요하는 피해의 경우 ⇒ 수목비의 20%이내 + 보호시설재료비 및 작업비 ※ 과도한 가지훼손 : 수관의 1/3이상 훼손 ○ 경미한 가지훼손 또는 보호시설을 요하는 피해의 경우 ⇒ 보호시설재료비 및 작업비
▲ 피해 이외의 원인 발생의 이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식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원인자가 이식을 하는 경우 : 관리청의 승인 및 감독 ※ 관리청의 지시에 위반시는 피해발생의 경우 적용 조치 나. 관리청에서 이식하는 경우 ⇒ 원인자가 이식에 따른 도급공사설계비 ○ 제거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원인자가 가지치기 · 제거하는 경우 : 관리청의 사전 승인 후 시행 ⇒ 대체식재를 위한 도급공사설계비 (세입세출의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으로 예치) 나. 관리청에서 가지치기 · 제거하는 경우 ⇒ 대체식재를 위한 도급공사설계비+제거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급공사설계비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한 원가계산 산정기준 적용(재료비 + 노무비 + 제경비) ○ 수목비 : 가격정보지(조달청) 가격적용, 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물가정보 및 물가자료 등 시중시가를 적용하여 산정 ○ 하자보수를 위한 담보 조치 : 보증보험증권이나 수목이 고사했을 경우를 고려한 도급공사설계비를 현금으로 하자책임 담보기간(「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하자책임 담보기간) 동안 예치 ○ 하자보수보증금 환불 등 : 하자담보기간이 만료되는 때에는 지체 없이 하자검사를 실시한 후 이상이 없으면 예치 받은 담보금을 환불 	

[별지 1]

가로수 (식재·이식·제거·가지치기 등)승인 신청서

신청인	주 소			연락처		
	성 명	(인)	주민등록번호			
사업 대상	가로수 위치					
	도로명, 노선명					
식재·이식·제거·가지치기 의 목적						
가로수 수종명 · 규격 · 수량						
연번	수종명	가로수 규격				수량 (본)
		수고(m) <나무의 높이>	수관폭(m) <가지 벌어진 폭>	흉고직경(cm) <지면 1.2m 높이 의 지름>	근원직경(cm) <지면연접 줄기직경>	
1						
2						
3						
4						
5						
6						

제천시가로수조성 및 관리조례 제19조에 따라 가로수 식재·이식·제거·가지치기의 승인을 신청합니다.

- 붙임 : 1. 위치도 1부.
 2. 현황도(지적도 포함)1부.
 3. 계획도면(식재·이식·제거·가지치기 가로수 표시) 1부.
 4. 도로첨용허가증(사본) 1부.

제천시장 귀하

[별지 2]

가로수 (식재·이식·제거·가지치기 등) 승인서					
신청인	주소			연락처	
	성명	(인)	주민등록번호		
도로명·노선명		가로수 위치			
식재·이식·제거· 가지치기의 목적					
가로수 수종명·규격·수량					
연번	수종명	가로수 규격			수량 (본)
		수고(m)	수관폭(m)	흉고직경(cm)	
작업방법					
작업기간					
승인조건		※조례 제19조 기타 승인조건 기재			
제천시가로수조성및관리조례 제19조에 따라 가로수의 식재·이식·제거· 가지치기를 위와 같이 승인합니다.					
년 월 일					
제 천 시 장					

[별지 3]

가로수관리대장(제22조관련)

관계 법령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8.2.29 법률 제8852호]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가로수"란 「도로법」 제11조에 따른 도로(고속국도를 제외한다)와 보행자전용도로 및 자전거전용도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의 도로구역 안 또는 그 주변지역에 심는 수목을 말한다.

제19조의2 (도시림등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산림청장은 전국의 도시림·생활림·가로수(이하 "도시림등"이라 한다)를 대상으로 도시림등의 조성·관리를 위한 기본계획(이하 "도시림등기본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시림등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에 관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도시림등의 현황 및 전망에 관한 사항

3. 도시림등의 정보망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산림청장은 도시림등기본계획의 시행성과 및 사회적·경제적·지역적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도시림등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④ 산림청장은 도시림등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이를 변경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도시림등의 실태를 조사하여 그 현황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도시림등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 (도시림등의 조성·관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9조의2에 따라 수립된 도시림등기본계획에 따라 그 관할 구역의 도시림등을 대상으로 도시림등의 조성·관리를 위한 계획(이하 "도시림등 조성·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시림등 조성·관리계획의 수립방법·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

③ 산림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도시림등 조성·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도시림등 조성과 관리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1조 (가로수의 조성 등에 관한 승인)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자가 다음 각 호의 행위 등을 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승인 절차, 승인 기간 및 비용 부담 등에 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가로수를 심고 가꾸기
2. 가로수를 옮겨심기
3. 가로수의 제거
4. 가로수의 가지치기 등

② 도로를 신설하는 행정기관은 그 도로에 가로수를 조성하여야 하며, 도로의 설계단계에서부터 가로수를 심을 공간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24조 (산림사업법인의 등록)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산림소유자,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 외의 자로서 산림사업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산림청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민법」에 따른 법인
 2. 기술수준과 자본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
-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신청한 자가 등록요건을 모두 갖추었으면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사업을 시행하는 법인(이하 "산림사업법인"이라 한다)으로 등록하고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③ 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라 산림사업법인을 등록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④ 산림사업법인은 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⑤ 산림사업법인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의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전문개정 2007.12.21]

- 제70조 (권한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산림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도지사나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위임받은 시·도지사나 소속 기관의 장은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아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시장·군수·구청장이나 2차 소속 기관의 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 ② 이 법에 따른 시·도지사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③ 이 법에 따른 지방산림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④ 이 법에 따른 산림청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7.12.2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2008.10.20 대통령령 제21087호]

제2조 (정의) ④ 법 제2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를 말한다. <신설 2008.6.20>

1. 「도로법」 제8조에 따른 도로(고속국도는 제외한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보행자전용도로 및 자전거전용도로
3. 「농어촌 도로정비법」 제4조에 따른 면도 및 리도

제19조 (도시림등 조성·관리계획 <개정 2008.6.20>)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0조에 따라 관할 구역 안의 도시림등 실태를 면밀히 조사·분석한 후 도시림등이 건강하고 기능이 최대한 발휘되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도시림등의 조성·관리를 위한 계획(이하 "도시림등 조성·관리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시림등 자원의 관리 및 이용의 효율성 제고, 공익적 기능 발휘, 국민의 이용 및 참여기회 증진을 고려하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8.6.20>

1. 도시림등 시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도시림등의 기능 구분에 관한 사항
3. 도시림등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사항
4. 도시림등의 보전·보호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도시림등의 기능 증진 및 유지에 관한 사항
6. 도시림등의 재해 예방 및 복구에 관한 사항
7.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에 소요되는 수종 등의 수급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7의2. 가로수의 지역별·노선별 수종 등 현황 분석

8. 그 밖에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제1항에 따른 도시림등 조성·관리계획은 10년마다 수립하되, 도시림등의 현저한 상황변화 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08.6.20>

③제1항에 따른 도시림등 조성·관리계획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도시녹화계획과 상충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6.20>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도시림등 조성·관리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08.6.20>
- ⑤ 도시림등의 기능별 구분·관리에 관한 세부사항 및 가로수의 조성·관리에 따른 수종선정, 식재 지역 등 필요한 기준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08.6.20>
-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6.20>

제25조 (산림사업법인의 등록기준) 법 제24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별표 1의 등록기준을 말한다. <개정 2008.6.20>

[별표 1] <개정 2008.6.20>

산림사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의 등록기준(제25조 관련)

법인의 종류	산림사업의 범위	자격 요건		
		기술 능력	자본금	사무실 전용면적
3. 나무병원	1. 수목피해 진단·처방 2. 수목피해 치유(방제를 포함한다)사업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 가. 「자격기본법」 제17조에 따라 수목보호에 관한 공인 받은 민간자격을 취득하고 등록한 기술자(수목보호기술자) 1명 이상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식물보호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1명 이상	1억 원 이상	20제곱미터 이상
6. 도시림등 조성	1. 도시림에서 수목 등의 식재 및 편의 시설의 설치 2. 생활림 조성 3. 가로수 조성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자격 가. 기술1급 이상인 산림경영 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조경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1명 이상 나. 기술2급 이상인 산림경영 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조경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1명 이상	1억 원 이상	30제곱미터 이상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 2008.10.31 농림수산식품부령 제36호]

제24조 (가로수 조성·관리) ① 영 제19조제5항에 따른 가로수 조성·관리 기준은 별표 10과 같으며, 그 밖에 가로수 조성·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6.20>

② 삭제 <2008.6.20>

③ 법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가로수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정하려는 때에는 제1항에 따른 가로수 조성·관리 기준의 범위에서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6.20>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로수의 조성 및 관리내용을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 가로수관리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0] <개정 2008.6.20>

가로수조성·관리기준(제24조제1항관련)

1. 기본방향

가로수 조성·관리의 기본방향은 다음 각 목과 같다.

- 가. 국민의 생활환경으로서 녹지공간을 확대한다.
- 나. 보행자와 운전자에게 편리하고 안전한 이동공간 제공한다.
- 다. 국토 녹색네트워크의 연결축으로서 그 기능이 충분히 발휘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용어의 정의

가. 삭제 <2008.6.20>

나. 바꿔심기

경관을 해치거나 도로교통안전에 장애를 주는 경우, 보행자나 지역주민의 안전에 문제가 있는 경우 또는 병충해 등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일정구간의 가로수 전체를 제거하고 동일한 장소에 적정한 가로수를 다시 심는 것

나. 메워심기

동일한 간격으로 심겨진 가로수가 빠져 있는 곳이나 고사한 가로수를 제거하고 가로수를 식재하는 것

다. 가로수 지주대

가로수의 기상적·인위적 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벼름 시설물(이하 "지주대"라 한다.)

라. 가로수 보호틀

가로수의 생육영역 확보와 보행자 등으로부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가로수 하단부의 지표면에 보도 포장과 구분하여 설치하는 시설물(이하 "보호틀"이라 한다.)

마. 가로수 보호덮개

보호틀 안의 흙의 굳음을 방지하여 수분흡수, 공기순환 등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인공설치물, 나무파쇄물 또는 자갈 등(이하 "보호덮개"이라 한다)의 시설물

바. 가로수 보호대

정류장·횡단보도 주변 등과 각종 건설공사로 가로수의 훼손이 예상되는 곳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가로수 둘레에 설치한 시설물(이하 "보호대"라 한다.)

3. 수종의 선정 및 구비조건

가. 수종은 지방자치단체의 가로수기본계획에 따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종을 선정하여야 한다.

- (1) 식재 지역의 기후와 토양에 적합한 수종
- (2) 식재 지역의 역사와 문화에 적합하고 향토성을 지닌 수종
- (3) 식재 지역의 주변 경관과 어울리는 수종
- (4) 국민의 보건에 나쁜 영향을 끼치지 아니하는 수종
- (5) 환경오염 저감, 기후 조절 등에 적합한 수종
- (6) 그 밖의 특정 목적에 적합한 수종

나. 가로수가 구비하여야 할 조건은 다음과 같다.

- (1) 수형이 정돈되어 있을 것
- (2) 발육이 양호할 것
- (3) 가지와 잎이 치밀하게 발달하였을 것
- (4) 병충의 피해가 없을 것
- (5) 재배수인 경우 활착이 용이하도록 미리 이식하였거나 완전한 뿌리풀기 및 뿌리돌림을 실시하여 세근이 잘 발달하였을 것
- (6) 재배수가 (1) 내지 (4)를 충족하고 충분한 크기의 분을 떠서 이식할 수 있을 것

4. 식재 가로수의 크기

식재할 가로수의 수고와 지하고는 운전자와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따로 정한다.

5. 식재 지역

가로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식재할 수 있다.

가. 외곽 산림 또는 하천으로부터 도시지역의 녹지 또는 하천까지 연결할 수 있는 지역

나. 도시지역의 단절된 녹지 간 또는 하천 간을 연결할 수 있는 지역

다. 도시지역 중 보행이동인구와 교통량이 많고 녹지가 부족한 시가지 지역

6. 식재 제한지역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는 가로수를 식재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도로의 길어깨
- (2) 수려한 자연경관을 차단하는 구간
- (3) 도로표지가 가려지는 지역
- (4) 신호등 등과 같은 도로안전시설의 시계를 차단하는 지역

(5) 교차로의 교통섬 내부. 다만, 운전자의 시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수관 폭(樹冠幅)·수고·지하고를 유지할 경우에는 삭제할 수 있다.

(6) 농작물 피해 우려 지역

- 나. 교목성 가로수를 삭제하려는 지역의 상층에 전송·통신시설이 있어 가로수의 정상적인 생육에 지장이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시설물의 관리 기관과 협의하여 지하에 매설하거나 이설 또는 보완시설을 설치한 후에 삭제하여야 한다.
- 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삭제 제한지역에 가로수를 삭제하고자 할 경우 이 해당사자와 협의하여 삭제할 수 있다.

7. 바꿔심기 및 메워심기 대상 가로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로수는 바꿔심기나 메워심기를 할 수 있다.

가. 고사 가로수

나. 수피 및 수형이 극히 불량한 가로수

다. 수간이 부러졌거나 부패하여 부러질 위험이 있는 가로수

라. 구간 배열이 극히 불규칙한 가로수

마. 병충해에 감염되어 생육 가망이 없는 가로수

바. 도로의 구조 또는 교통에 장애를 주는 가로수

사. 미관을 해치거나 공해를 유발하는 가로수

아. 재해와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본 가로수

8. 가지치기

가로수의 가치치기를 하는 때에는 다음 각 목에 따라 하여야 한다.

가. 가로수는 자연형으로 육성하여야 한다.

나. 수형에 변화를 주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가로수의 건강한 생육, 아름다운 수형, 도로표지 및 신호등 등과 같은 도로안전시설에 대한 시계확보, 통행공간의 확보, 전송·통신시설물의 안전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지치기를 할 수 있다.

다. 가지치기는 산림경영기술자 등 관련 전문가가 작업하도록 하여야 한다.

9. 병해충 방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병해충의 발생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로수에 대한 병해충 방제를 실시하여야 한다.

10. 외과수술 등

병해충, 분진, 매연, 화학약품, 물리적 압력 등에 의해 피해를 받았거나 수세가

쇠약하여 피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가로수 중에서 특별히 보호해야 할 노거수, 보호수 등의 가로수는 외과수술, 영양공급, 환토·객토, 통기·관수시설의 설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1. 지형과 토양 보전

가로수 식재지역의 지형과 토양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생육환경개선, 환토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2. 가로수 관리시설물

지주대, 보호틀, 보호덮개, 보호대, 통기·관수시설 등 가로수 관리시설물은 가로수의 생육 및 보행자 등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13. 점검

-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노선별·수종별로 가로수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로수 점검시 간신을 요하는 가로수, 병충해의 감염 여부, 고사목 예워심기 또는 신규 식재량 및 생육상태, 식재지 토양상태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14. 식재와 관리의 시행

식재와 관리의 시행은 지방자치단체 관계 공무원의 감독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15. 관리 협의 및 재정

- 가. 행정구역의 경계 지역에 있는 가로수의 관리는 관계지방자치단체의 장간 협의에 따라 그 관리의 방법을 따로 결정할 수 있다.
- 나. 관계지방자치단체의 장 사이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지방자치단체가 기초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광역자치단체의 장에게, 광역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산림청장에게 각각 재정신청을 할 수 있다.

16. 보고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로수기본계획이 수립되는 즉시 산림청장에게 제출하고 가로수 조성실적을 해당연도 12월 말까지 산림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도로법

[전부개정 2008.3.21 법률 제8976호]

제8조(도로의 종류와 등급) 도로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고, 그 등급은 다음에 열거한 순위에 따른다.

1. 고속국도
2. 일반국도
3. 특별시도(특별시도)·광역시도(광역시도)
4. 지방도
5. 시도(시도)
6. 군도(군도)
7. 구도(구도)

산림조합법

[일부개정 2008.3.21 법률 제8980호]

第46條 (사업) ①地域組合은 그 目的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各號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한다. <개정 2002.12.18, 2004.12.31, 2005.8.4, 2007.8.3>

2. 經濟事業

아. 街路樹植栽 및 造景事業

자. 林木·林野의 買賣·賃貸借·交換 등의 仲介

차. 林產物을 소재로 하는 建物 기타 工作物의 建設 및 販賣

카. 보관사업

타. 조수보호사업

9. 國家, 公共團體, 中央會 또는 다른 組合이 委託하는 사업

10. 다른 法令이 地域組合의 사업으로 規定하는 사업

11. 第1號 내지 第10號의 사업과 관련되는 附帶事業

12. 기타 設立目的의 달성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山林廳長의 승인을 얻은 사업

5. 國家, 公共團體, 中央會, 다른 組合 또는 組合員이 委託하는 사업

6. 다른 法令이 專門組合의 사업으로 規定하는 사업

7. 第1號 내지 第6號의 사업과 관련되는 附帶事業

第108條 (사업) ①中央會는 그 目的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各號의 사업을 행한다. <개정 2002.12.18, 2004.12.31>

라. 樹木의 病理治療 및 外科手術, 造景事業

마. 林產物 기타 林業用機資材의 輸出·輸入

8. 國家 또는 公共團體가 委託하거나 보조하는 사업

9. 다른 法令에서 中央會의 사업으로 정하는 사업

10. 第1號 내지 第9號의 사업과 관련되는 附帶事業

11. 기타 設立目的의 달성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山林廳長의 승인을 얻은 사업

가로수조성 및 관리규정 고시제정(안)

1. 제정이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이에 대한 가로수조성 및 관리규정에 관한 세부 사항을 고시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제1장은 총칙으로 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그리고 도로의 종류에 따른 가로수관리청을 규정함(제1조 내지 제3조)
- 나. 제2장은 가로수의 조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식재 위치, 식재 기준, 식재의 시기, 식재 제한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4조 내지 제7조)
- 다. 제3장은 가로수의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바꿔심기와 메워심기, 가지치기, 병해충 방제, 지형과 토양보전, 식재제한 구역의 기준 가로수 관리, 관리시설물, 점검 주민참여 등의 사항을 규정함(제8조 내지 제16조)

산림청 고시 제2006-58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로수조성 및 관리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6년 8월 8일

산 림 청 장

가로수조성 및 관리규정 고시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림기본법 제18조의 규정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4조에 의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의 각호와 같다.

1. “수고” 라 함은 지표면에서 수관 정상까지의 수직거리를 말하며, 수관의 정상부에 돌출된 도장지는 제외한다.
2. “수관고” 라 함은 역지 끝을 형성하는 최하단의 가지에서 정상까지의 수직거리를 원칙으로 하며, 능수형은 최하단의 가지 대신 역지의 분지된 부위를 채택한다.
3. “지하고” 라 함은 지표면에서 역지끝을 형성하는 최하단 가지까지의 수직거리를 원칙으로 하며, 능수형은 최하단의 가지 대신 역지의 분지된 부위를 채택한다.
4. “가슴높이지름”이라 함은 지표면에서 1.2m 지점의 줄기의 직경을 말하며, 가슴높이지름 측정부위에서 부위의 줄기가 2개 이상일 경우 각 줄기의 가슴높이지름 합의 70% 가 달해수목의 최대 가슴높이지름보다 클 때는 이를 채택하며, 작을 때는 가장 굵은 줄기의 직경을 가슴높이지름으로 한다.
5. “근원지름”이라 함은 가슴높이지름을 측정할 수 없는 관목이나 가슴높이 이하에서 줄기가 분기하는 교목성 수종, 만경목, 어린묘목 등에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지표면의 줄기의 굵기를 말한다.
6. “수관폭”이라 함은 타원형 수관은 최대총의 수관축을 중심으로 한 최단과 최장의 폭을 합하여 나눈 것을 수관폭으로 채택한다. 또한 조형한 교목이나 관목도 이에 준하여 도장지는 제외한다.

제3조(가로수관리청) ①가로수의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조성과 관리를 위하여 별표 1과 같이 가로수관리청을 구분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는 가로수의 조성과 관리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2장 가로수 조성

제4조(식재위치) 가로수는 도로의 폭, 도로주변의 장애물 등 주변 여건에 따라 보행자와 운전자의 안전과 도로의 구조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다음의 각호에서 정한 위치에 식재한다.

1. 보도에 교목을 식재할 경우에는 제설제 등 화학약품으로부터의 악해와 이동차량 등으로부터의 물리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보·차도 경계선으로부터 가로수 수간의 중심까지 거리는 최소 1미터 이상 확보한다.
2. 보도가 없는 도로에 교목을 식재하는 경우에는 갓길 끝으로부터 수평거리 20미터 이상 떨어지도록 식재한다. 다만, 현지여건상 갓길 끝으로부터 2미터 이상 떨어진 위치에 식재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할 경우에는 가지치기 등을 통해 수고, 지하고, 수관폭 등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도로의 구조보전과 교통안전에 지장이 없도록 관리방안을 수립하여 갓길 끝으로부터 수평거리 10미터 이상, 2미터 미만인 지역에 식재할 수 있다.
3. 절토 비탈면은 식재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녹화, 차폐 등 특별한 목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절토 비탈면에도 가로수를 식재할 수 있다.
4.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행자전용도로 및 자전거전용도로에는 보행자 및 자전거의 원활한 이동과 안전에 제한이 없는 범위 내에서 가로수를 식재할 수 있다.
5. 중앙분리대, 기타 가로수관리청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치에 가로수를 식재할 수 있다.

제5조(식재 기준) 가로수는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식재한다.

①교목(키큰나무)

1. 식재간격은 8미터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도로의 위치와 주위 여건, 식재수종의 수관폭과 생장 속도, 가로수로 인한 피해 등을 고려하여 식재간격을 조정할 수 있다.
2. 식재유형은 도로선형과 평행한 열식을 원칙으로 하되 도로의 여건, 방음·녹음제공·경관개선 등 특정목적에 따라 군식·혼식할 수 있다.
3. 보도의 한쪽을 기준으로 1열심기를 하고 보도의 폭이 넓을 경우 2열 이상 식재할 수 있다.
4. 도로의 동일 노선과 도로 양측에는 동일한 수종으로 식재한다. 다만, 도로의 방향이 바뀌거나 도로가 신설·확장되는 경우에는 동일 노선일지라도 다른 수종으로 식재할 수 있다.

②관목(키작은나무)

1. 식재간격은 식재수종의 특성에 따라 경관조성과 교통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식재할 수 있다.
2. 식재유형은 동일수종으로 군식하고, 하나의 식재군에는 동일 수종으로 식재한다. 다만, 경관적으로 중요한 지역에는 다른 수종으로 혼식할 수 있다.

③식재공간의 여유가 있는 경우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과 도로구조의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교목과 관목, 초본류를 다중구조로 식재할 수 있다.

제6조(식재시기) 식재의 시기는 가로수가 정상적인 활착이 가능한 봄철과 가을철에 심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가로수관리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기간을 정하여 심을 수 있다.

제7조(식재 제한지역) 규칙 제24조 별표 10의 제6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도로표지가 가려지는 구간은 별표 2와 같다.

제 3 장 가로수 관리

제8조(바꿔심기와 매워싱기) 규칙 제24조 별표 10의 제7호 규정에 따라 선정하고 식재 및 제거 전에 매복조사를 실시하여 적기에 시행되도록 한다.

제9조(가지치기) 가지치기를 할 경우에는 별표 3에 따라 실시한다.

제10조(병해충 방제) 병해충 방제를 할 경우에는 별표 4에 따라 실시한다.

제11조(지형과 토양보전) ①가로수 관리청은 가로수 식재지역의 지형과 토양을 보전하기 위하여 가로수 조성계획지 또는 기조성지에 대해서는 절토·성토 등 지형을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주변에 시각적으로 가려야 할 필요가 있는 대상을이 있거나 방음 수립대를 조성할 필요가 있는 지역 등에 대한 성토

2. 보행자, 운전자 및 지역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의 절·성토

3. 도로의 신설·개축·수선·유지보수공사 등을 위한 절·성토

4. 기타 가로수 관리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②가로수 조성계획지 또는 기조성지의 토양이 쓰레기, 건축폐기물 매립 등으로 가로수의 정상적인 생육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기존의 불량토양을 제거하고 생육에 적합한 토양으로 환토하여야 한다.

③가로수 조성계획지 또는 기조성지의 토양이 달압, 오염, 척박화 등으로 인하여 가로수 생육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객토 또는 시비하여 가로수 생육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④가로수 식재, 불가피한 지형의 변경 등에 의해 발생하는 표토는 일정한 장소에 수집·보관하였다가 표토로 재사용하며, 보존해야 할 표토의 길이는 30센티미터 이상으로 한다.

⑤동절기에 도로 재설을 위해 사용된 화학약품이 섞인 눈더미가 보호를 내에 적재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2조(식재 제한지역의 기준 가로수) 규칙 제24조 별표 10의 제6호에 따른 식재 제한지역에 위치한 기준의 가로수는 다음 각호와 같이 정비하여야 한다.

1. 편지식 또는 현수식 도로표지 전방의 수고 5미터 이상의 가로수는 적정수종으로 간신하거나 제거 또는 적기애 가지치기 시행

2. 복주식 또는 단주식 도로표지 전방의 가로수는 표지판을 가리지 않도록 적정수종으로 바꿔심기 또는 적기애 가지치기 시행

제13조(가로수 관리시설물) 새로이 조성하는 가로수는 설치시에, 기존의 가로수 관리시설물을 개보수시에 별표 5와 같이 설치한다.

제14조(점검) 규칙 제24조 별표 10 제13호에 따른 점검 중 경기점검은 5월과 11월에 실시하고 수시점검은 병해충 확산 등으로 피해가 발생하여 긴급히 점검해야 할 경우 또는 식재·바꿔심기·예위심기 등 관리상 필요한 시기에 할 수 있다.

제15조(관리대장) 규칙 제24조 제4호의 가로수 관리대장은 별표 6에 따라 작성한다.

제16조(주민참여 등) ①가로수 관리청은 가로수 관리에 주민참여를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권장할 수 있다.

1. 물주기

2. 병해충 발생신고

3. 가로수 생육에 지장을 주거나 피해를 주는 장애물의 제거

4. 사고 또는 고의로 가로수가 피해를 받았거나 받을 우려가 있을 때 가로수 관리청에 신고

5. 비상재해시 긴급조치 지원 및 협조

② 가로수관리청은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주민들에 대한 홍보와 안내를 실시한다.

1. 가로수 또는 관리시설에 가축을 매거나 광고물을 부착하는 행위
2. 가로수 또는 관리시설을 공작물의 자주로 이용하는 행위
3. 보호줄 또는 보호대 내에 쓰레기 등 물건을 적재하는 행위
4. 기타 가로수의 생육이나 관리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일체의 행위

③ 주민들이 가로수의 유지·관리에 참여할 경우 가로수관리청은 필요한 재료나 물품, 장비, 가로수 부산물인 열매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01 고시는 2006년 8월 8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가로수관리청

도로의 종류	지역구분	가로수관리청	비고
일반국도	군(郡) 지역, 광역시 또는 시의 읍·면 지역	광역시장·도지사	
	특별시와 광역시의 동(洞) 지역	특별시장·광역시장	
	시(市)의 동(洞) 지역	시장	
지방도	군(郡) 지역, 광역시 또는 시의 읍·면 지역	도지사	국가지원지방도 포함
	광역시의 동(洞) 지역	광역시장	국가지원지방도 포함
	시(市)의 동(洞) 지역	시장	국가지원지방도 포함
특별시도·광역시도	전지역	특별시장·광역시장	
시도·군도·구도 등 기타도로	전지역	시장·군수	

[별표 2]

도로표지 전방의 가로수 식재 제한구역

구 분	방향 표지	기타 표지
도시지역	40m	40m
기타지역	70m	40m

- 비고 1. “도시지역”이라 함은 광역시와 시지역 중 읍·면 지역을 제외한 지역, 특별시 전 지역을 말하며 “기타지역”이라 함은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을 말한다.
2. 다음의 경우에는 도로표지 전방에 가로수를 식재할 수 있다.
- 가. 갓길 끝에서 2m 이상 떨어진 위치에 식재할 경우
 - 나. 최대수고 4m이하의 소교목이나 관목류의 경우
 - 다. 가지치기 등 타 방법을 통하여 가로수가 도로표지를 가리지 않도록 구체적인 가로수 관리방안이 마련된 경우

[별표 3]

가지치기 대상 및 기준

1. 대상	가. 반드시 가지치기 해주어야 할 대상 1) 병충해 피해 가지 2) 도장지 또는 쇠약지 3) 마른가지(고사지) 4) 늘어지거나 가지끼리 교차되어 미관상 좋지 않은 가지 5) 뿌리부분에서 새로 나온 교목의 맹아지 나. 지하부(뿌리)에 비하여 지상부(수관부)가 지나치게 무성하여 풍해, 설해 등의 피해가 우려될 때 다. 가지의 과다로 수형의 조정이 필요할 때 (사철나무, 협죽도, 수국 등) 라. 도로표지, 신호등과 같은 도로안전시설의 시계를 가릴 경우 마. 가지가 전송·통신시설물에 닿아 안전상에 문제가 있을 경우 바. 개화·결실을 촉진하고자 할 때 (매화, 등나무, 석류, 명자 등)
	가. 낙엽 후부터 이른봄 새싹이 트기 전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상 특활엽수는 절단면 동해 방지를 위해 겨울철에는 실시하지 않음 나. 강도의 가지치기는 수년에 나누어 실시 다. 기타 주의사항 1) 전년에 나온 가지에 개화하는 수종 : 꽃눈(화아)이 친 후 2) 당년에 나온 가지에 개화하는 수종 : 봄 3) 단풍나무, 매화나무 등 이른봄 발아 수종 : 이른 봄 가지치기 금지 4) 새싹이 나온 후 가지치기 : 사철나무, 벼드나무처럼 맹아가 강한 수종
	가. 침엽수는 눈 바로 윗쪽에서, 활엽수는 아래로 향한 눈 위에서 가지치기 나. 피해지는 살아있는 끝부분에서 가지치기 다. 살아있는 가지는 나무의 전체적인 모습 및 피해방지 면을 감안, 가지 기부 또는 중간부위에서 가지치기 라. 가지기부에서 자를 때에는 지옹부가 손상되지 않도록 지맥선 밖에서 가지치기 마. 가지 중간을 자를 때에는 발아 육성하고자 하는 눈 위에서 가지치기 바. 톱을 사용하여 절단면이 거칠어지지 않도록 가지치기 사. 굵은 가지를 자를 때에는 톱으로 먼저 가지 밑부분을 일정 깊이로 자른 후 상단부를 잘라 절단면이 갈라지거나 찢어지는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가지치기 아. 가지치기시 주의해야 할 수종 1) 절단부가 쉽게 썩는 수종 : 오동나무, 벚나무류 2) 절단부에서 수액유출 심한 수종 : 단풍나무, 자작나무류 3) 맹아가 나오지 않는 수종이거나 약한 수종 : 소나무, 전나무 4) 전정에 의해 가지가 마르는 수종 : 단풍나무 5) 수형을 앓기가 쉽기 때문에 전정을 않는 수종 : 전나무, 가문비나무, 총비나무, 자작나무, 느티나무, 칠엽수, 후박나무 등
	4. 절단면의 처리 절단면이 넓어 부패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텁신페스트(지오판도포제) 등으로 도포하여 부후균의 침입을 방지

[별표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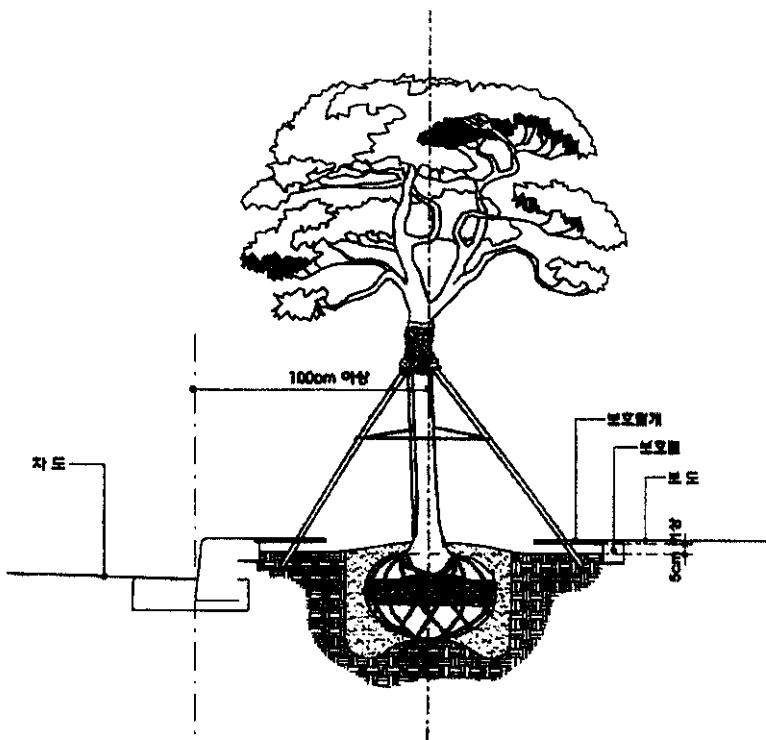
가로수 병해충 방제요령

1. 병해충 방제를 실시하기 전에 주민에게 고지하여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피해가 예상되거나 피해를 입은 가로수에 대하여 가지치기·바꿔심기·메워심기 등을 통한 임업적 방제를 우선적으로 실시하고 이로 인해 발생된 가지와 낙엽 등은 소각 처리한다.
3.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임업적 방제로 목적하는 바의 방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약제 등을 이용한 화학적 방제를 실시할 수 있다.
4. 제3호에 의한 화학적 방제를 실시할 경우 인근 주민·보행자·운전자, 동·식물, 수질과 토양등에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저독성의 약제를 필요 최소량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5. 월동중인 유충을 포살하기 위하여 짚이나 새끼 등으로 줄기에 잠복소를 설치하여 병해충을 방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잠복소는 소각 처리한다.

[별표 5]

가로수 관리시설물 설치 방법

5-1 : 관리시설물과 가로수의 위치



- 가. 가로수의 중심에서 보·차도 경계까지의 거리는 100cm 이상이어야 한다.
- 나. 보호덮개(철제 등 구조물)와 지면파의 높이 차이는 5cm 이상을 원칙으로 하나 차량이나 기타 인위적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은 5cm 이하로 할 수 있다.
- 다. 보호틀과 보도의 높이를 같게하여 우수 등이 보호틀 내로 유입될 수 있도록 한다.

5-2 보호틀, 보호덮개, 보호대, 통기·관수시설

<보호틀, 보호덮개, 보호대, 통기·관수시설 설치의 일반>

가. 보호틀

- 1) 보호틀은 도로의 여건에 따라 대상형, 직사각형, 정사각형, 부정형으로 한다.
- 2) 가로수의 원활한 생육공간 확보와 비포장면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하여 대상형, 직사각형, 정사각형의 순으로 설치하고, 부정형은 도로의 여건과 가로수 수종에 따라 설치한다.
- 3) 대상형 보호틀은 교통량보행자가 많지 않거나 보도의 폭이 넓을 경우 설치한다. 대상형 보호틀의 크기는 좁은 폭을 1.5m 이상으로 하되 도로의 여건과 가로수 수종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 4) 직사각형 보호틀의 크기는 좁은 폭 1.5m 이상, 넓은 폭 3m 이상으로 하되 도로의 여건과 가로수 수종에 따라 크기를 조정할 수 있다.
- 5) 정사각형의 보호틀은 교통량보행자가 아주 적거나 보도의 폭이 협소할 경우 설치한다. 정사각형 보호틀의 크기는 가로와 세로 1.5m 이상으로 하되 도로의 여건과 가로수 수종에 따라 크기를 조정할 수 있다.

나. 보호덮개

- 1) 보호덮개는 철제 등의 구조물 또는 나무파쇄물, 자갈 등으로 한다.
- 2) 철제 등의 구조물로 된 보호덮개를 사용하지 않고 나무파쇄물, 자갈을 채우거나 잔디, 초화류, 관목류 등을 심을 수 있으며 구조물로 된 보호덮개 하단에 잔디 등을 식재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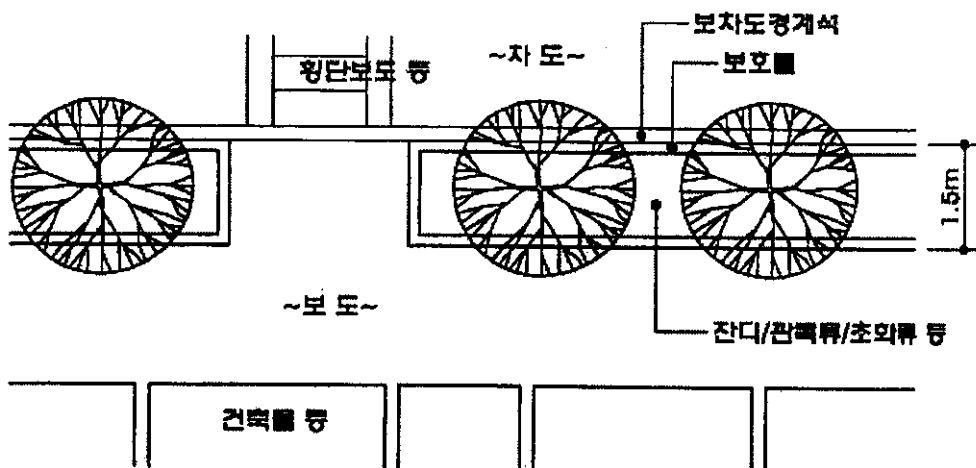
다. 보호대

보호대는 보행자나 교통에 의해 가로수 피해가 예상되는 횡단보도 주변 등의 가로수나 특별히 보호해야 할 가로수에 설치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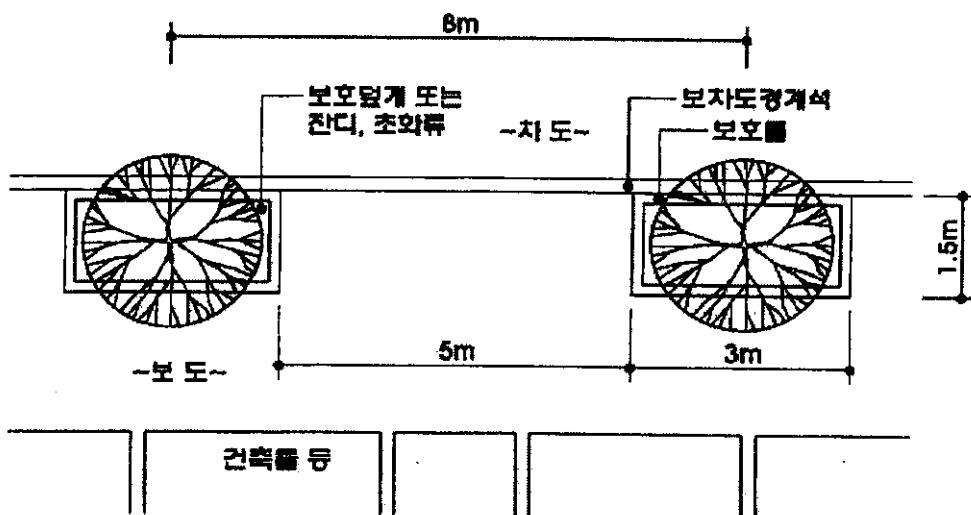
마. 통기·관수시설

통기·관수시설은 담암 등으로 인해 우수·관수 등이 땅속 깊숙이 침투하지 못하거나 통기성이 불량할 때 설치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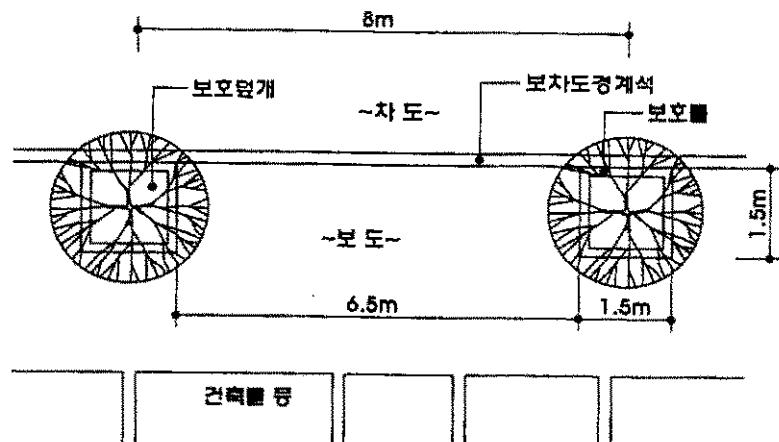
<대상형 보호틀 및 보호덮개 설치(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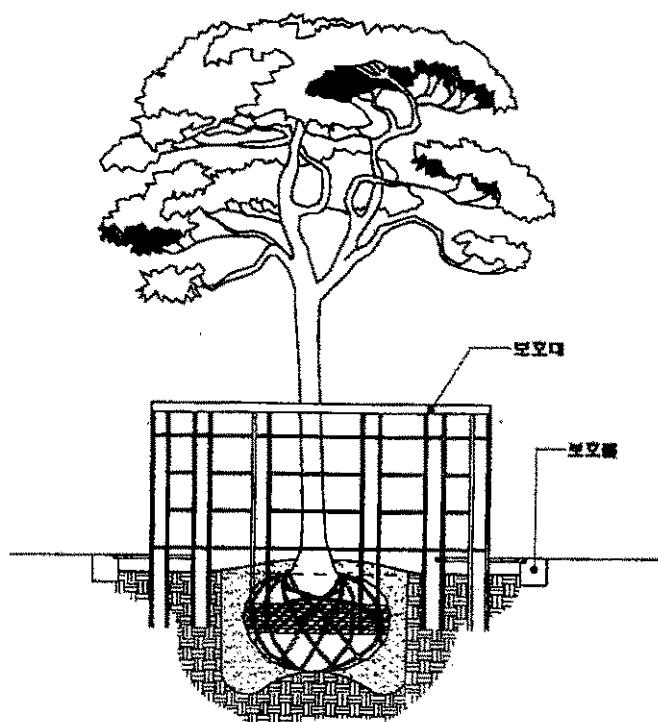
<직사각형 보호틀 및 보호덮개 설치(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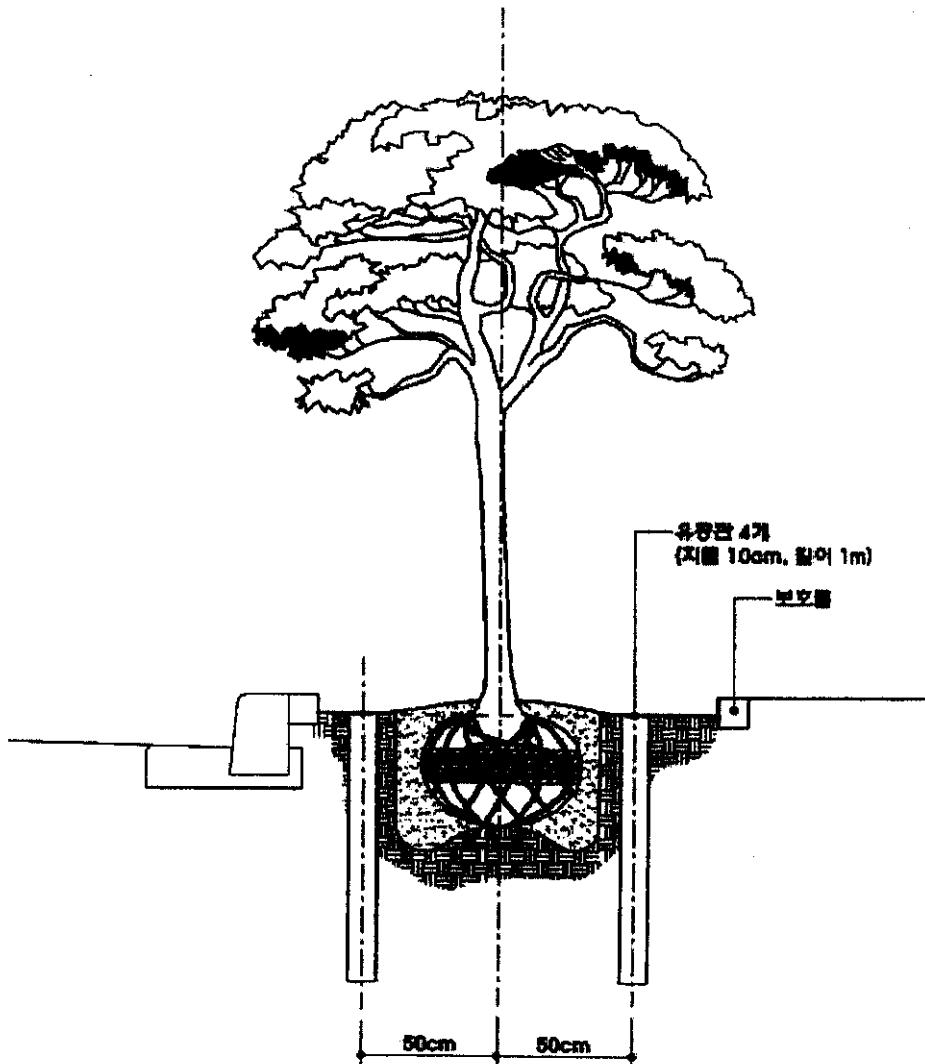
<점사각형 보호줄 및 보호덮개 설치(예)>



<보호대 설치(예)>



<통기·관수시설 설치(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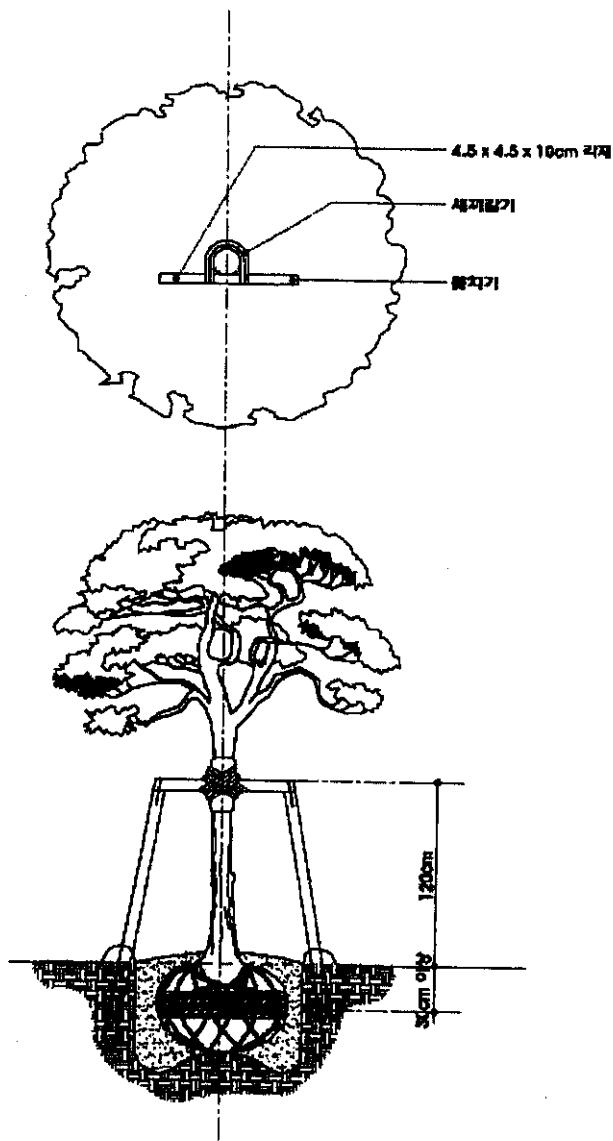
- 가로수 중심으로부터 50cm 되는 곳에 지름 10cm 이상의 유공관을 4개 이상 설치하여 통기성을 개선하고 우수나 관수시 땅 속 깊이 물이 스며들 수 있도록 1m 이상 깊이로 설치한다.
- 유공관 내부는 지름 2cm 가량의 쇠석으로 채운다.

5-3 : 지주대의 설치

<지주대 설치의 일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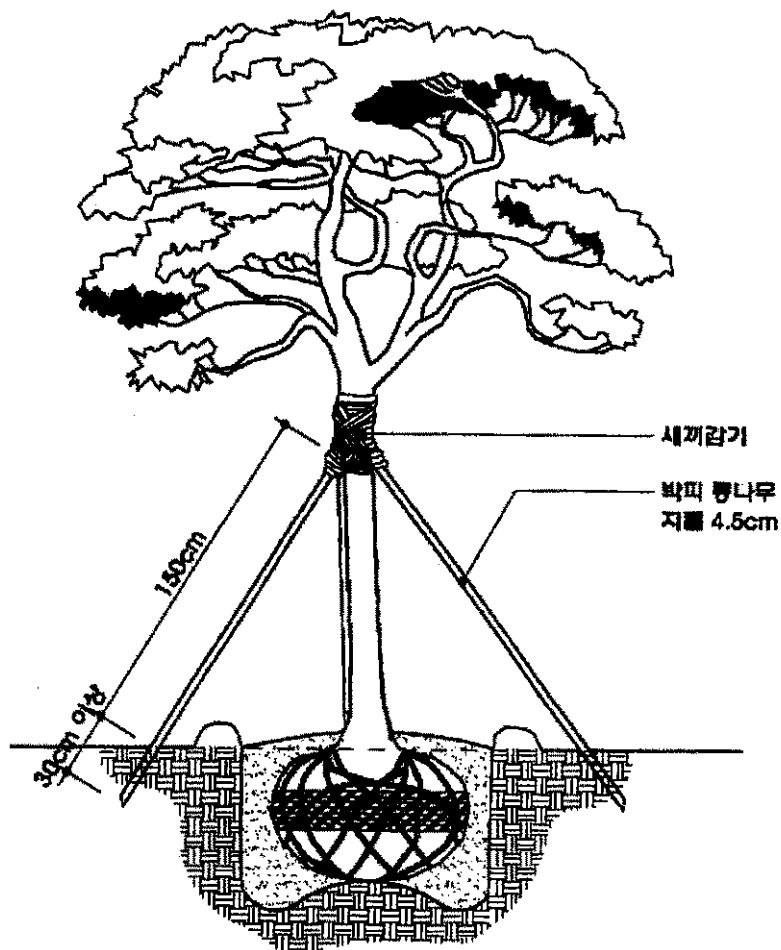
- 가. 지주대는 박찌 통나무, 각목 또는 특별히 고안된 재료(각종 파이프, 와이어, 플라스틱)로 사용할 수 있다. 단, 지주용 목재는 내구성이 강한 것이나 방부처리(탄화, 도료, 약물주입)한 것으로 한다.
- 나. 수고 4.5m 이상의 가로수에는 지주목을 삼각형으로 세우거나 당김줄형으로 설치한다.
- 다. 수고 4.5m 이하의 가로수는 이각형, 삼발이, 삼각형, 사각형을 설치한다.
- 라. 매몰형지주대는 수목식재가 경관상 매우 중요하고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지표에 지주대가 나타나지 않아야 할 때 사용한다.
- 마. 지주대와 수목을 결박하는 부위에는 완충재를 수간에 대어 가로수의 성장에 따른 수간의 손상을 방지하여야 한다.
- 바. 지주의 방향은 주풍 방향을 고려하여야 하며 경사지 등 지형적인 관계나 지반과의 관계도 고려하여야 한다.
- 사. 땅속에 지주대를 박을 때 선단부가 쪼개지거나 부서질 우려가 있는 경우 톱으로 그 부분을 잘라 보기 흉하지 않도록 해 놓는 동시에 내구성과 미관을 고려하여 지주대의 지상부에 페인트나 방부제를 발라 놓는다.
- 아. 가로수가 완전히 활착되어 더 이상 지주대의 필요가 없을 경우 생장에 따른 수간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주대를 제거하여야 한다.

<이각지주대 설치(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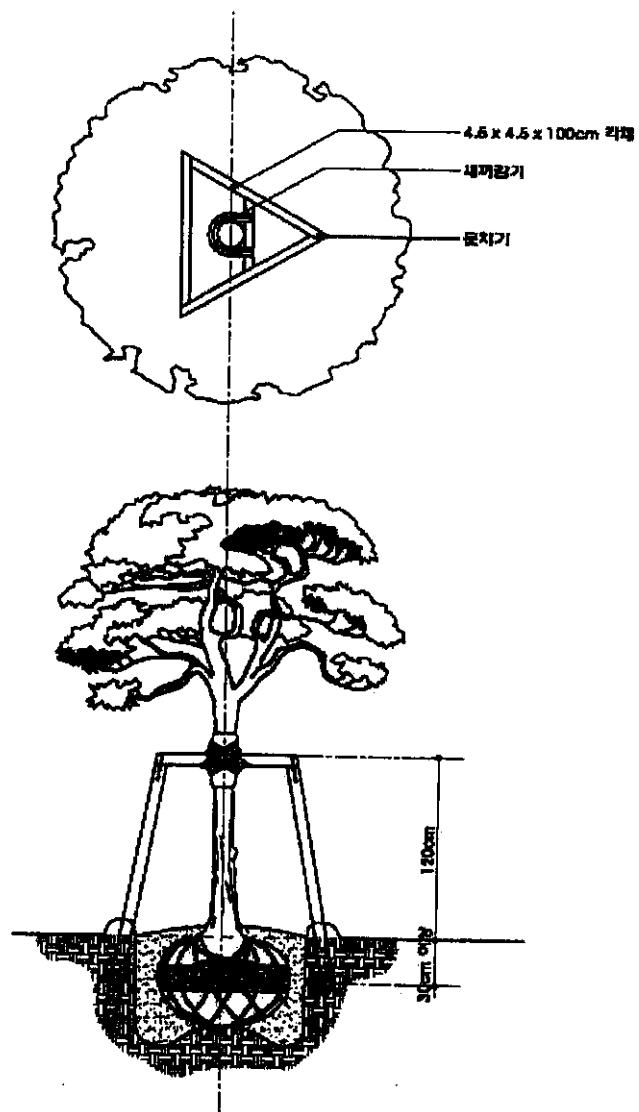
수고가 2m 이하일 경우 적용하여 수목의 중심으로부터 양쪽으로 일정 간격을 벌려서 각목이나 말뚝을 깊이 30cm 정도로 박고, 박은 나무를 각목과 연결 못으로 고정시킨 다음 가로지르는 각목과 가로수의 주간을 새끼나 끈으로 묶는다.

<삼발이지주대(소형) 설치(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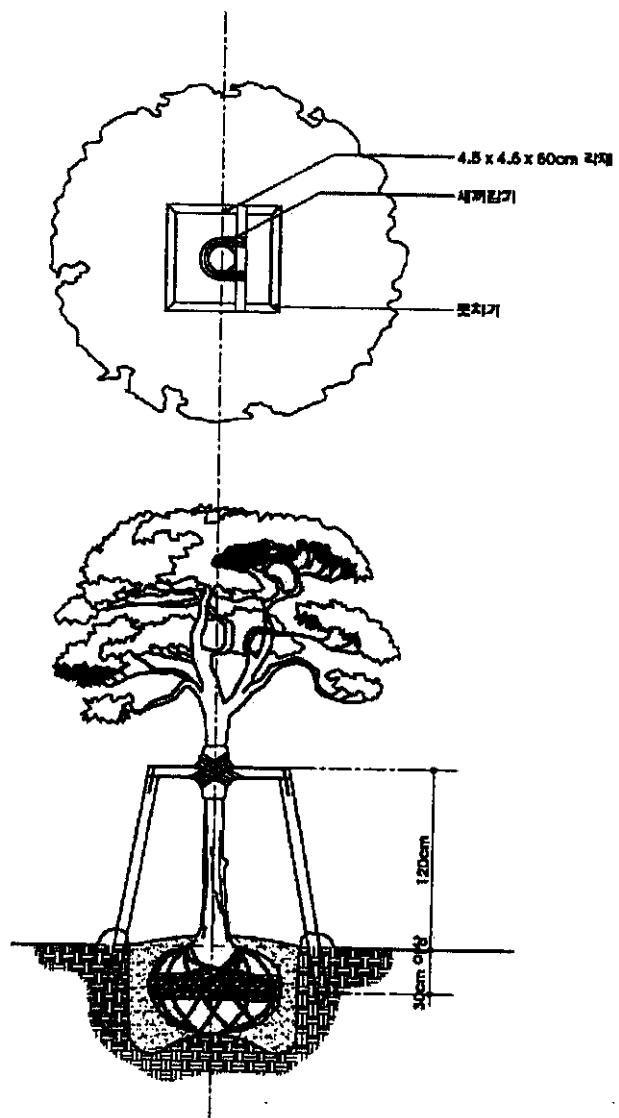
- 가. 삼발이지주대(소형) : 일반적으로 수고 5m 이하의 수고일 경우 적용하며 경관상 주요 지점이 아닌 곳에 설치한다. 길이 180cm 정도의 박피 통나무나 각재, 또는 플라스틱 등 기타 재료로 된 것을 사용하여 삼각형으로 걸쳐 주간을 안정시킨다.
- 나. 삼발이지주대(대형) : 일반적으로 수고 5m 이상의 수고일 경우 적용하며 경관상 주요 지점이 아닌 곳에 설치한다. 길이는 270cm 정도의 지주대를 사용하고 약 50cm를 땅에 묻는다.

<삼각지주대 설치(예)>



- 가. 삼각지주대는 삼발이지주대에 비해 소요되는 공간이 적어 보도의 폭이 좁을 경우에 사용한다.
- 나. 각재나 박피 통나무, 기타 재료를 이용하여 시가지 등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곳에 설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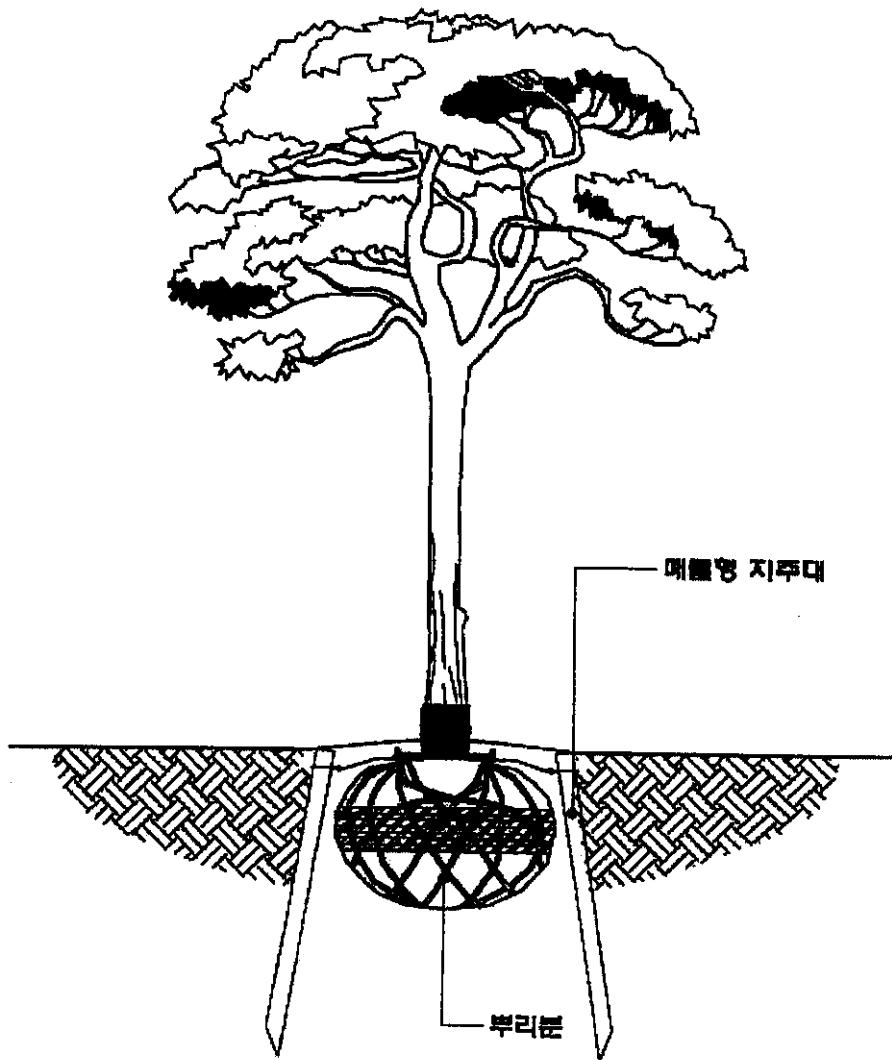
<사각지주대 설치(예)>



가. 삼각 지주목과 마찬가지로 보도의 폭이 좁을 때 사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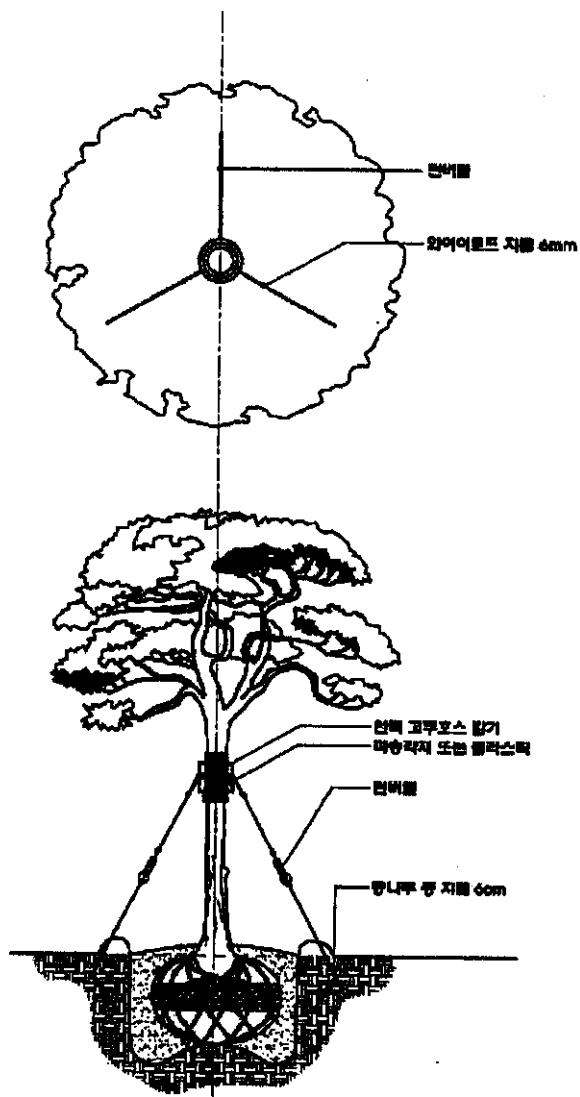
나. 각재나 박피 통나무, 기타 재료를 이용하여 시가지 등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곳에 설치한다.

<매몰형 지주대 설치(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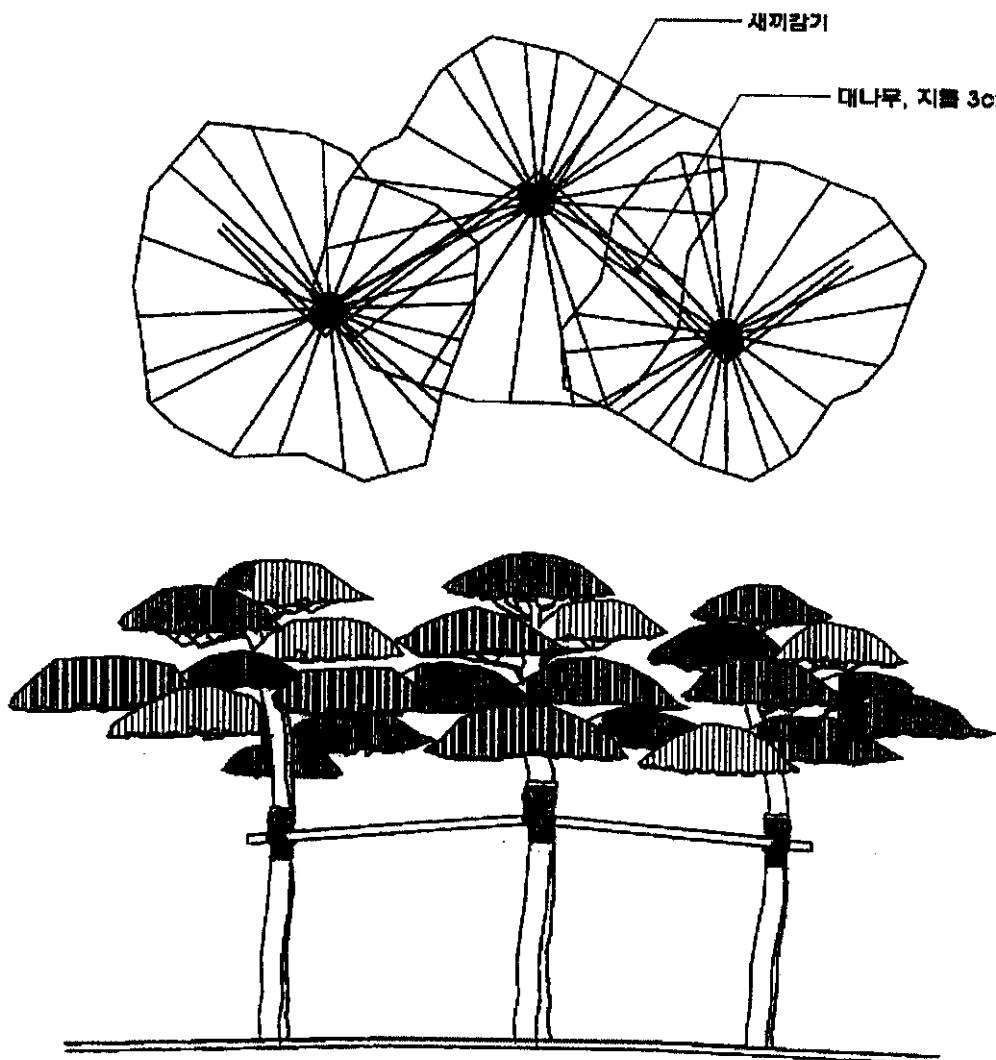
가로수의 식재가 매우 중요한 위치일 경우, 또는 지주대가 통행에 지장이 많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 방법을 사용한다.

<당김줄지주대 설치(예)>



- 가. 일반적으로 대형 거목에 적용하며 특히 경관적 가치가 요구되는 곳에 설치 한다. 수목의 주간에 완충재를 감아 수피를 보호하고 그 부위에서 세 방향으로 철선을 당겨 지중에 박은 말뚝에 고정한다.
- 나.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보행자가 알 수 있도록 와이어로프에 표식(끈, 리본 등)을 달아야 한다.

<연계형 지주대 설치(예)>



군식을 할 경우 3~4개의 수목을 한꺼번에 안정시킬 경우에 사용한다. 수목의 주간에 완충재를 감아 수피를 보호한다.

[별표 6]

가로수관리대장 작성요령

1. 도로노선명, 구간, 도로종류, 도로폭 기재요령

- 가. 가로수 식재지의 도로에 관한 일반적인 내용을 기입
- 나. 도로의 좌측, 우측, 중앙분리대별로 관리대장을 따로 작성
- 다. 도로노선명은 코드화 되어 있을 경우 코드로 입력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OOO간선, OOO지선으로 기재
- 라. 구간은 시점과 종점으로 나누어 기입하고, 도로의 종류는 일반국도, 지방도, 광역시도, 특별시도, 시도, 군도 등으로 기재
- 마. 좌우측은 가로수가 조성된 지역을 시점에서 종점방향으로 기재 좌/우측을 기재
- 바. 연장은 도로의 길이를 m단위로 기재하고 도로폭은 차도, 좌측보도, 우측보도 각각의 폭을 m 단위로 기재

2. 가로수 조성현황 기재요령

- 가. 최초 신규조성된 가로수에 관한 내용을 작성
- 나. 식재위치는 도로의 시점을 기준으로 보도전구간, 중앙분리대, OOOm 교통신섭, 길이끼끌, 성토면 등으로 구분하여 기재
- 다. 식재거리는 가로수 식재 총 연장거리를 기재
- 라. 식재유형은 단열식재, 병렬식재, 3열식재, 군식, 혼식 등으로 구분
- 마. 보호를 유형은 대상형(여러 가로수를 하나의 보호틀로 설치한 경우), 직사각형, 정사각형, 부정형(관목류의 군식의 경우) 등으로 구분

3. 가로수 변동 및 관리현황 기재요령

- 가. 가로수 관리현황에 관한 내용을 작성
- 나. 최초 신규조성 수종을 우선 기재하고, 그 이후부터는 가로수 증감 내역에 따라 가감
- 다. 증감내역과 관리현황에 관한 내용을 기재할 경우 수종이 구분이 될 수 있도록 기재
- 라. 비교란에 특이사항을 기록

4. 가로수 관리시설 현황 기재요령

- 가. 가로수 관리시설에 관한 내용을 작성
- 나. 최초 신규조성 관리시설을 우선 기재
- 다. 각 관리시설의 설치(보수로 인한 설치 포함), 제거 등에 관한 사항을 기재
- 라. 각 노선별 별도 관리시설이 있을 경우 기타란에 기재
- 마. 비교란에 특이사항을 기록

■ 제천시 공고 제2009 -24호

제천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월 16일
제 천 시 장

제천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 입법예고

1. 조례명 : 제천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

2. 제정이유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 시행규칙 제정과 가로수 조성 및 관리규정 산림청 고시 제2006-58호에 따른 가로수의 조성과 관리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목적과 용어의 정의, 그리고 가로수 관리대상 및 가로수 조성 및 관리 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조 내지 제4조)
- 가로수 수종선정 기준 및 구비조건, 조성협의, 식재위치, 식재기준, 식재시기, 바꿔심기, 메워심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내지 10조)
- 가지치기, 병해충방제, 외과수술, 지형과 토양보호, 가로수 관리시설물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1조 내지 제15조)
- 가로수 점검, 주민참여, 민간위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6조 내지 제18조)
- 원인자·훼손자 부담금, 부담금징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9조 내지 제20조)

4. 의견서 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9년 2월 5일까지 제천시장 (참조 산림공원과장)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641 - 5857, FAX 641 - 5359 담당자 : 엄재현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주소

○ 기타 참고 사항 등

* 자발행장주 서보		공원녹지팀장	산림녹화팀장	환경팀장	기획팀장	기획팀장
엄재현	이용학	02/06 윤기선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결과보고서

제천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 입법예고에 대하여 공고한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1. 입법예고 조례명 : 제천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조례(안)
2. 공고번호 : 제천시공고 제2009-24호
3. 공고기간 : 2009. 1. 17 ~ 2. 5(20일)
4. 공고매체 : 제천시보 및 제천시홈페이지(입법예고)
5. 공고내용 : 별도붙임
6. 공고결과
 - 조회 수 : 38명
 - 의견제시자 : 없음

붙임 : 공고안 1부.(별지) 끝.